

학교 안전 교직원 연수

2026학년도

학교안전사고예방

학교안전계획

수지초등학교

I 개요



1.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령 제5조 등
-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조례 제7조(교육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2. 비전과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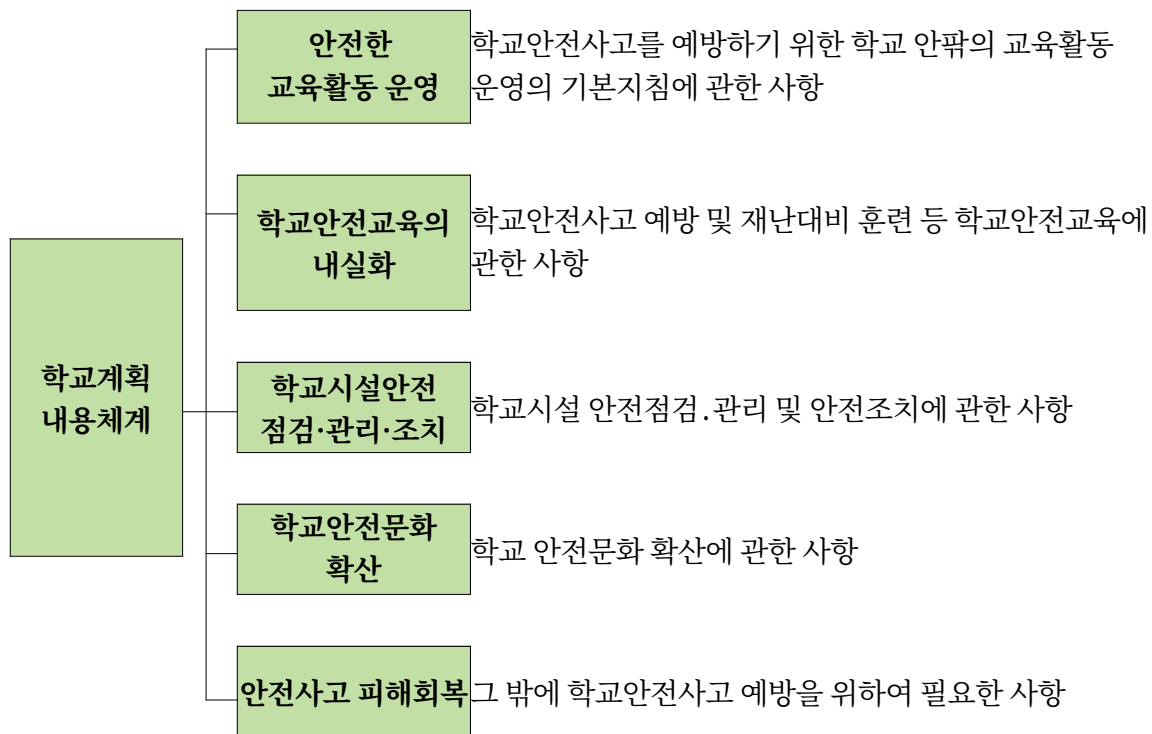
가. 비전

- 안전·안심 365 수지초

나. 목적

- 실효성 있는 학교계획의 수립으로 학교 구성원의 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 자신의 안전과 타인과 동료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역량 배양
- 학교 안전 관리의 체계성(계획, 준비, 실행, 평가, 피드백) 확보

3. 학교 계획의 내용 체계



4. 학교 계획의 수립 · 시행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6항에 따라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

II 학교안전 현황

학교안전교육추진 실적

가.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 현황

구분 연도		교직원 수(명)				안전관련 전문교육 이수				
		교원	직원	계약제 교직원	계 (A)	교원	직원	계약제 교직원	계 (B)	이수율 (B/A)×100
2023 ~ 2025	2023	75	6	18	99	75	6	18	99	100%
	2024	78	8	38	133	37	6	28	71	53.3%
	2025	88	6	35	129	67	6	28	101	78.3%

※ 교직원의 이수자는 15시간 이상(3년 미만 종사자는 6개월마다 2시간) 안전교육을 이수
- 5기 2024~2026학년도 100% 이수를 목표로 함.

나. 학생 및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 (기준 : 2025학년도)

- 1) 보건교사가 1개 학년(5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 포함 교육,
그 외 학년은 학년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의해 실시
- 2) 교직원: 이론 및 실기 교육 이수

다. 안전영역별 학생안전교육 이수시간 현황 (기준 : 2025학년도)

교육과정 이수시간 안전영역(필수이수시간)		학기		이수시간 계
		1학기	2학기	
생활안전(12)		6.3	6.0	12.3
교통안전(11)		10	10.7	20.7
폭력 및 신변보호(8)		9.3	7.8	17.1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10)	약물 중독 예방(5)	5.3	2.8	8.1
	사이버 중독 예방(5)	3.3	2.7	6
재난안전(6)		2.5	3.8	6.3
직업안전(2)		0.8	1.3	2.1
응급처치(2)		1.7	1.0	2.7
계(51)		39.2	36.1	75.3

라. 전년도 학교계획 추진 실적

기본 계획 각호	법제도	세부점검내용	계획수립		전년도 실적			추진실적
			○	×	○	△	×	
1.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기본계획, 지역계획, 학교계획	학교계획 수립 시 안전담당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는가?	✓		✓			-학년초 학교안전 계획 교직원 연수
		학교계획에서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교직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		✓			
		학교안전계획의 취지와 목표를 학교실정에 맞게 적절히 설정하였는가?	✓		✓			
		우리 학교는 학교와 주변지역의 위험성을 파악한 후, 이에 적합한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스쿨존 내 안전시설 점검을 통한 미흡시설 개선 추진 (용인시청 및 경찰서 협조)
		학교안전계획은 교직원들 간에 명확히 공유되었는가?	✓		✓			
		안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시간, 정보, 인원, 예산 등) 과 수행 절차는 파악되었는가?	✓		✓			
2. 교육활동 운영의 기본지침	학사일정별 학교안전	학사일정별 연간 안전관리계획은 각 계절별 재난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		✓			-학년초, 학기말, 학사일정 에 맞게 학교 안전주간 운영
		체험과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계획하였는가?	✓		✓			
		안전학습 관련 콘텐츠는 적절하고 풍부하게 준비하였는가?	✓		✓			
		시기, 활동, 행사별로 발생하기 쉬운 사고나 취약 학생 혹은 구역을 파악하여 예방조치를 할 계획을 세웠는가?	✓		✓			
	외부체험활 동 안전	현장체험학습 계획 시 현장체험학습 지침의 사항들을 교사들에게 공지하고, 계획에 게재하였는가?	✓		✓			-시기별 안전사고 방교육 실시 및 가정통신 문 발송
	학교주변 안전관리	학교안전의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지자체, 소방서, 경찰서등) 간 협력 계획이 마련되었는가?	✓		✓			
		스쿨존 정비 방법은 마련되었는가?	✓		✓			
	안전약자 안전대책	요양호자(안전약자)를 파악하고, 안전약자 안전대책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			
3. 학교안전교 육	예방 및 학교안전교 육	안전교육 연간 계획표에서 학교와 학교 주변에 존재하는 위험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교육 계획에 포함시켰는가?	✓		✓			-7 대안전교 육을 교과 및 창체와 연계하여 수시로 실시
		안전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교육에 포함시켰는가?	✓		✓			
		학생 참여형 안전교육을 준비했는가?	✓		✓			
		안전교육 교사연수 연간계획은 준비 되었는가?	✓		✓			
		안전사고 유형별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교과 연계 방법이 수립되었는가?	✓		✓			
		안전 전문가 초빙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			
	정기훈련	학교구성원 모두 체험할 수 있는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외부기관 연계 교육 신청
		훈련은 구체적 목표 및 평가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		✓			
		훈련은 체험형·토의형으로 수립하였는가?	✓		✓			
		학교에서 일어날 위험이 높은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재난대비훈련을 계획했는가?	✓		✓			
		심폐소생술의 이론과 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			
		안전약자를 포함한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화재대피, 지진 대피 훈련 실시

기본계획 각호	법제도	세부점검내용	계획수립		전년도 실적			추진실적
			○	×	○	△	×	
4. 학교시설 안전점검·관리 및 안전조치	매월 안전점검의 날(제6조)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안전관리 (제7조) 실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계획·실시하였는가?	✓		✓			
	CCTV 관리	CCTV 관리 업무 분장은 명확한가?	✓		✓			
5. 학교 안전문화 확산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기록하고 자료를 기록해서 공유하며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각종 안전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공유·적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자료는 정기적으로 갱신, 정비하여 손쉽게 찾아 쓸 수 있게 준비하였는가?	✓		✓			
		학교 구성원의 안전 관련 행동, 실천, 태도 등에 대해 인정과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학교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가?	✓		✓			
		학교 안전은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확보될 수 있다는 가치관 확산을 위한 홍보·협업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안전 관리 활동에 따른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방안을 마련했는가?	✓		✓			
		학교 구성원이 학교 안전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했을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		✓			
6. 기타 사항		재난과 학교 안전 사고의 보고와 보상에 관한 절차와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마련해 놓았는가?	✓		✓			

2. 학교안전 현황 분석 및 개선 방향

가. 학교안전사고 현황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 시스템 통계, 2025학년도)

○ 활동 시간별

교육과정-교과			기타교육활동					합계
실험실습. 기타	이론수업	체육	기타학교	방과후	등하교	쉬는시간	점심시간	
1	2	20	4	9	4	8	10	58

○ 활동 장소별

교내											교외	합계
계단	기타공 용	복도	교실	특별실	급식실	화장 실	강당	기타 체육시설	놀이터	운동장	인도	
6	2	4	8	3	1	2	21	6	1	4	0	58

○ 사고 형태별

부딪힘			낙상	스스로 신체에 충격		기타	합계
사람과의 충돌	물체와의 충돌	움직이는 물체와의 충돌	넘어짐	스포츠 활동 중	이동 중	그 밖의 손상	
8	15	14	7	6	2	6	58

○ 사고 행동별

학습활동	스포츠활동				일상활동				이동	합계
수업	라켓형 스포츠	구기운동	육상	기타운동	기타 일상	식사	휴식	장난/ 놀이	걷기, 뛰기 등	
2	2	17	4	7	7	1	3	4	11	58

학교안전사고 분석 결과

- 체육시간 안전 사고 비율이 높음.
- 이동중 안전 사고, 장난 및 놀이로 인한 사고 비율이 높음.

개선방향

- 쉬는 시간, 점심시간 실내 생활 안전지도
- 신체 활동전 안전 지도 및 준비운동 철저 필요
- 학생들의 안전 사고 발생 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 필요
- 학급내 수시 지도 및 안전 관련 학생자치회와 협력을 통한 개선 추진

나. 학교 안전 실태조사 결과 (2025학년도)

○ 학교안전 실태조사 분석 결과

-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7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이 교육과정 내에서 계획되고 실시되고 있음
- 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학교시설환경 및 교육환경이 조성됨.

- 교내 안전 사고 예방 스티커 부착
- 후관 출입문 이용 시간 통제로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 화재 경보기 작동시 전학년 상시 대피 일상화

III

학교 현황 및 조직체계

1. 학교 현황

〈2026.3.3일자 기준이며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음〉

가 학급편성 및 학생현황

학 년		1	2	3	4	5	6	특수	합계	유치원					
										만3세	만4세	만5세	특수	방과후	합계
2026 학년도	학급수	9	9	10	12	13	12	2	65(2)	1	1	1	1	3	7
	학생수	245	227	262	312	339	305	12	1690 (12)	12	19	22	1	미정	52
2025 학년도	학급수	9	9	11	12	11	12	2	64(2)	1	1	1	1	3	7
	학생수	216	251	306	334	308	317	9	1732	11	20	20	1	미정	52

나 교직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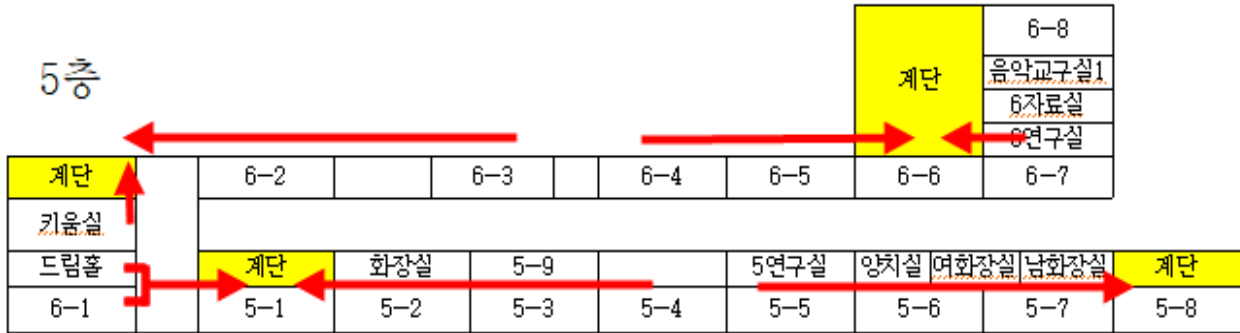
교원																											
초등교원 86+늘봄실장1 (관리자3+담임65+전담13+특수2+보건2+상담1)													유치원					초+유									
교장	교감	부장 담임	부장 전담	담임 교사	전담 교사	특수	보건	상담	6개월 기간제 전담	정원외보 건기간제	늘봄 실장	소계	유치원 담임	특수 유치원 담임	방과후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사 (미발령1)	소계	재직 교원 합계										
1	2	9	3	55	8	2	1	1	3	1	1	87	3	1	1	5	92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특수운영직			공익	합계							
교육행정공무원					사서/교무/행정/과학실무 /행정보조/특수교육지도사						(초)돌봄 (유)방과후		급식 (영양1 조리14)			합계	특수운영				공익						
실장	과장	계장	행정 주무관	시설 주무관	소계	사서	교무 실무	늘봄 실무	과학 실무	행정 실무	행정 보조	특수 교육 지도사	소계	초등 오후 돌봄 전담사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소계	영양 사	조리 사	조리 실무	조리 실무 대체	소계	공무 직 합계	시설 미화원	시설 당직원	소계	사회 복무 요원	재직 교직원
1	1	1	2	1	6	1	2	1	1	1	1	1	8	3	2	5	1	1	13	0	15	34	2	1	3	1	130

다 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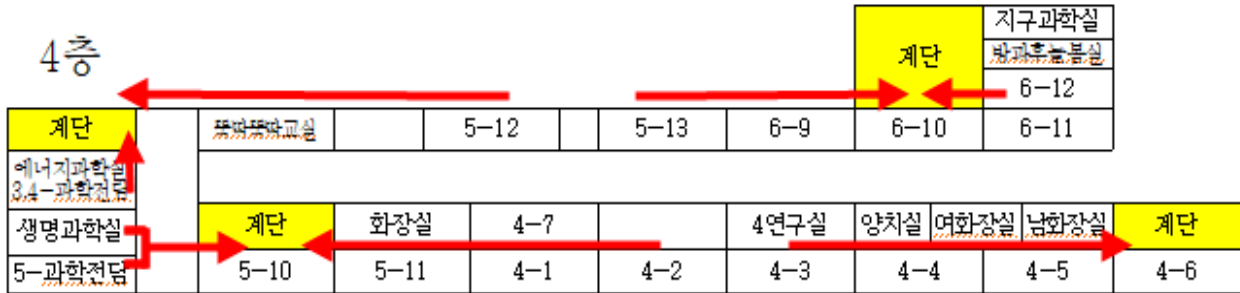
시설 현황	교장 실	교무 실	행정 실	방송 실	초등 교실	유치 원교실	연구 실 (초+유)	전담 실	시정 각실	보건 실	상담 실	서고	급식 실	도서 실	민원 면담 실	체육 관	키움 홀	드림 홀	과학 실	컴퓨 터실	목공 실	돌봄 교실	봄 수업전 용실	방과 후운 영실	시설 관리 실	숙 직 실	시설 미화 원실	학부 모회 실 (노인 봉사)
	1	1	1	1	65	4	7	3	1	2	1	1	1	1	1	1	2	2	3	1	1	3	1	1	1	1	2	1

비상시대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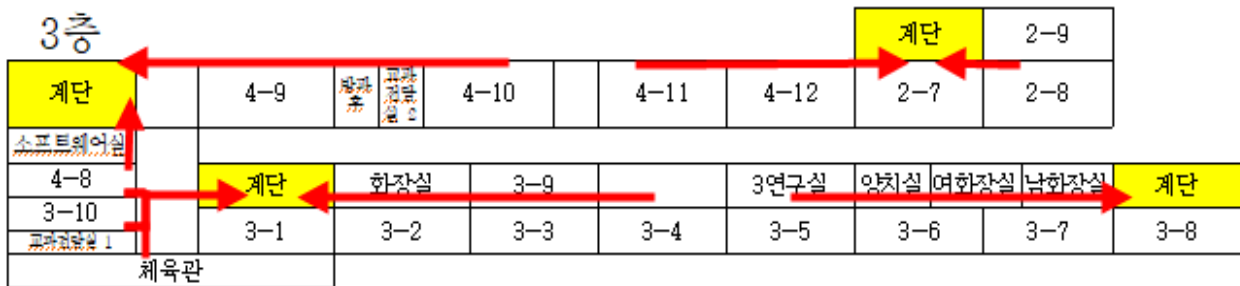
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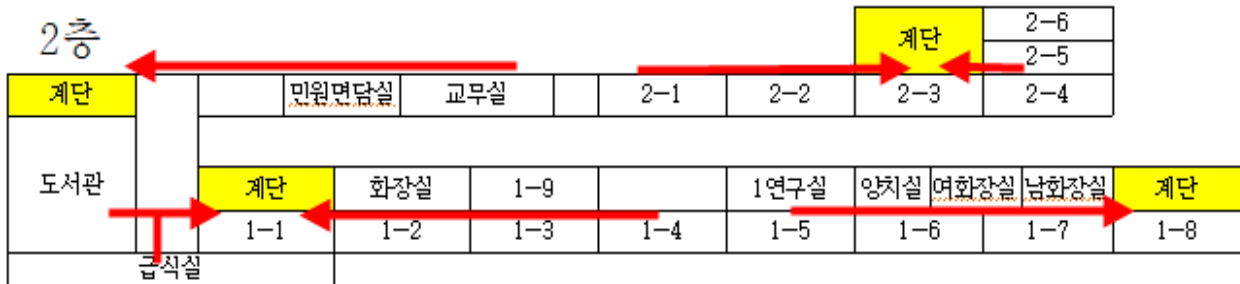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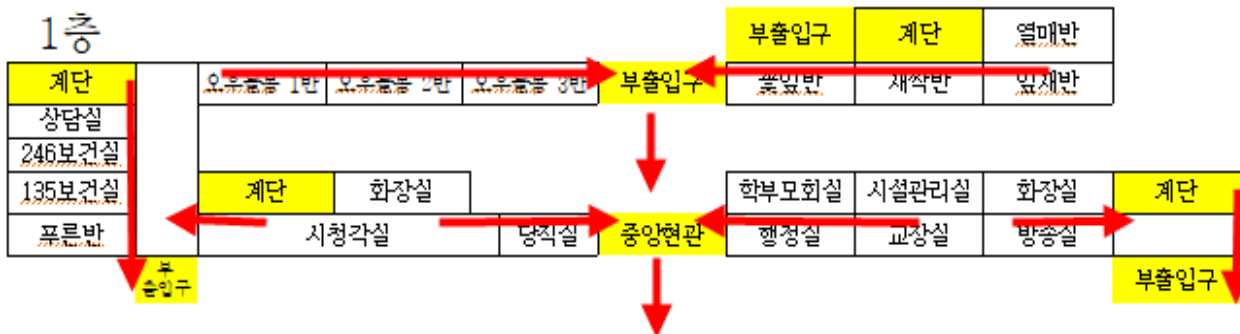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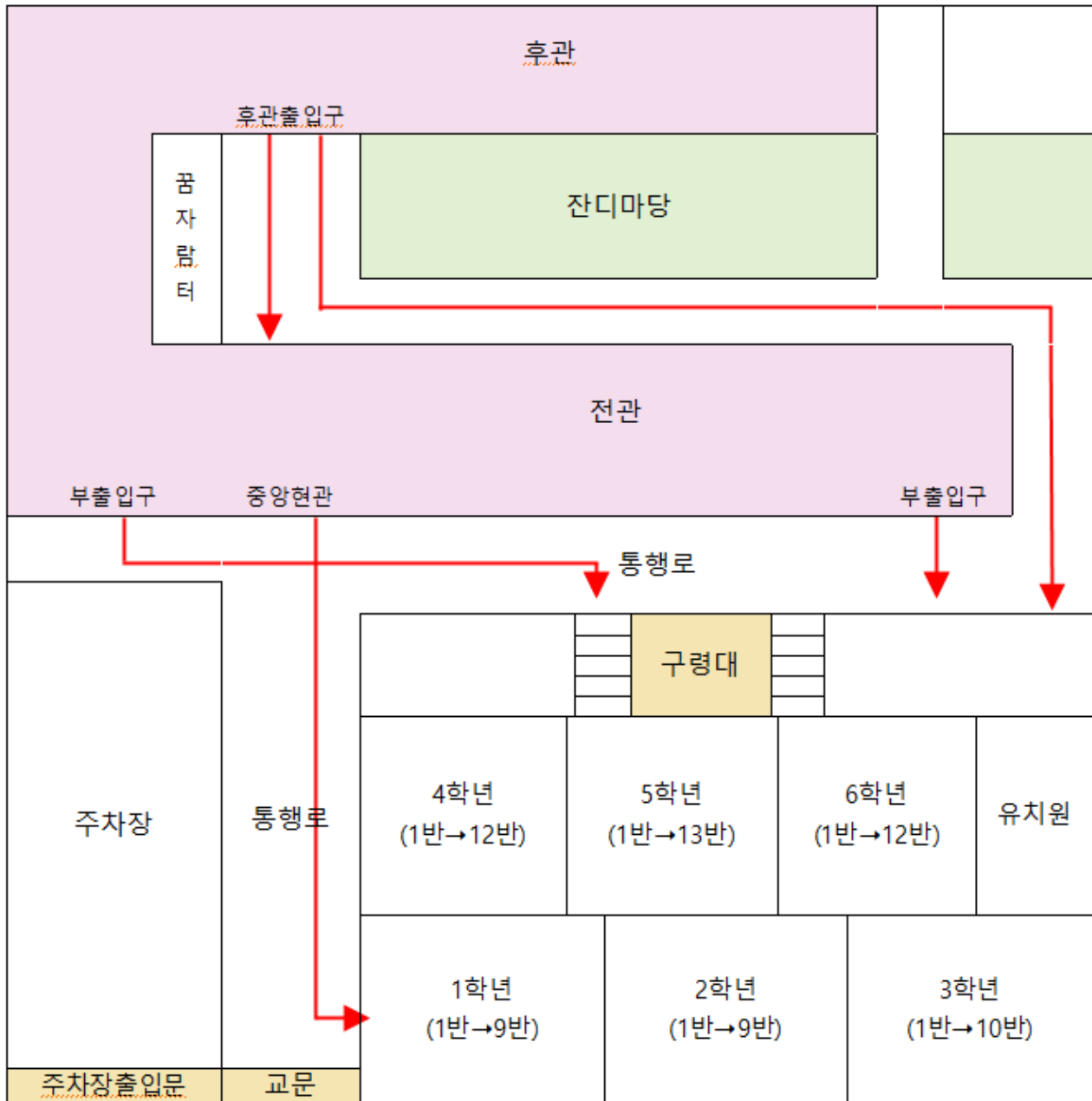
2층



1층



2. 비상대피 시 학년별 대피 장소



<비상 대피 시 학년별 대피 출입문>

- 후관출입구에서 잔디마당 거쳐 운동장 : 6-2, 6-3, 6-4, 6-5, 6-6, 6-8, 6-9, 6-10, 6-11, 6-12
4-12, 2-6, 2-7, 2-8, 2-9, 2-1, 2-2, 2-3, 2-4, 2-5
- 후관출입구에서 중앙현관 거쳐 운동장 : 5-11, 6-1, 6-7, 4-10, 4-11, 3-11
- 부출입구 : 5-5, 5-6, 5-7, 5-8, 5-9, 4-5, 4-6, 4-7, 4-8, 3-5, 3-6, 3-7, 3-8, 1-5, 1-6, 1-7, 1-8
- 중앙현관 : 1-1, 1-2, 1-3, 1-4, 1-9, 3-1, 3-2, 3-3, 3-4, 3-9, 3-10
- 주차장쪽 부출입구 : 4-1, 4-2, 4-3, 4-4, 4-9, 5-10, 5-1, 5-2, 5-3, 5-4
- 유치원은 유치원 교실 옆 부출입구에서 건물 바깥쪽, 잔디마당을 거쳐 운동장으로 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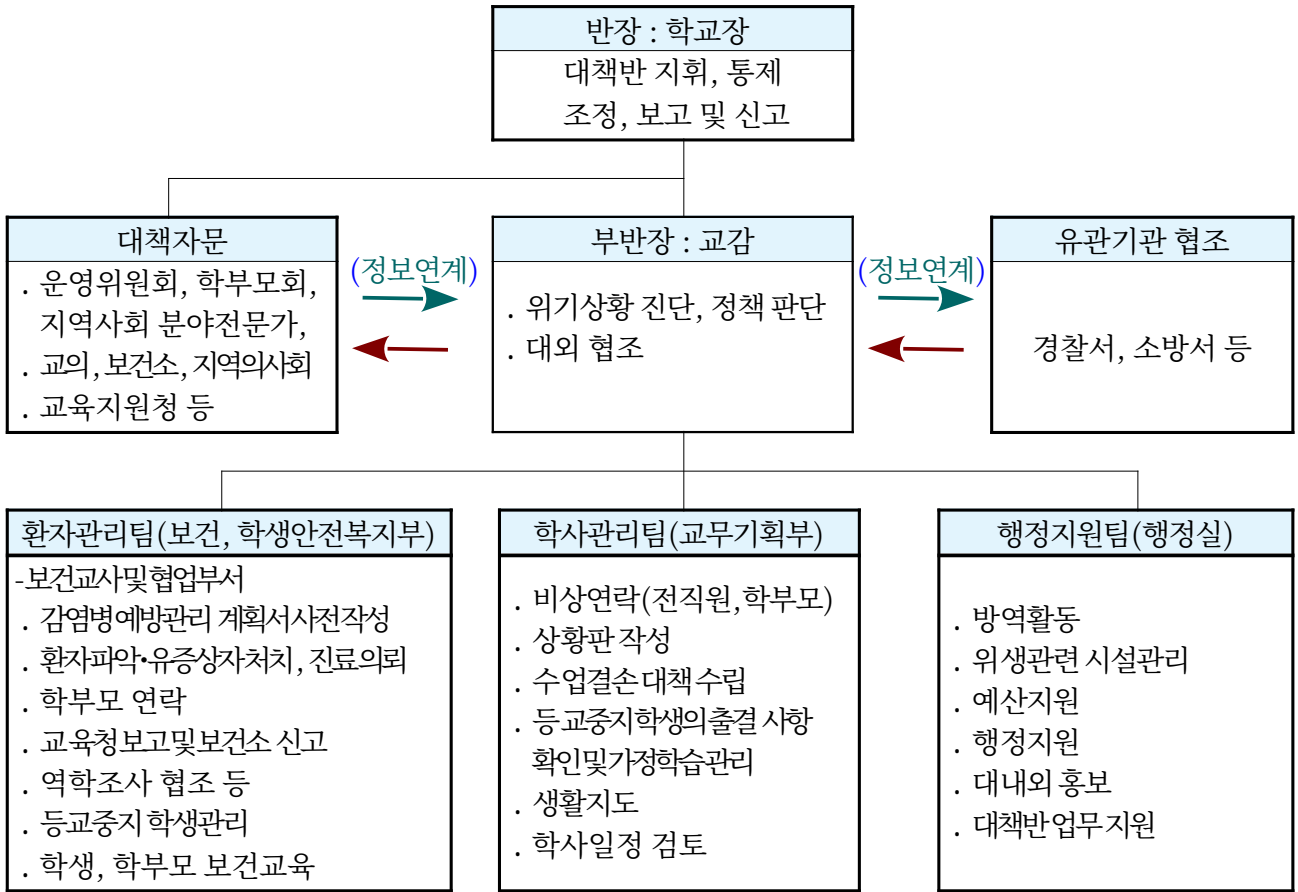
3. 학교안전조직

가. 안전관리추진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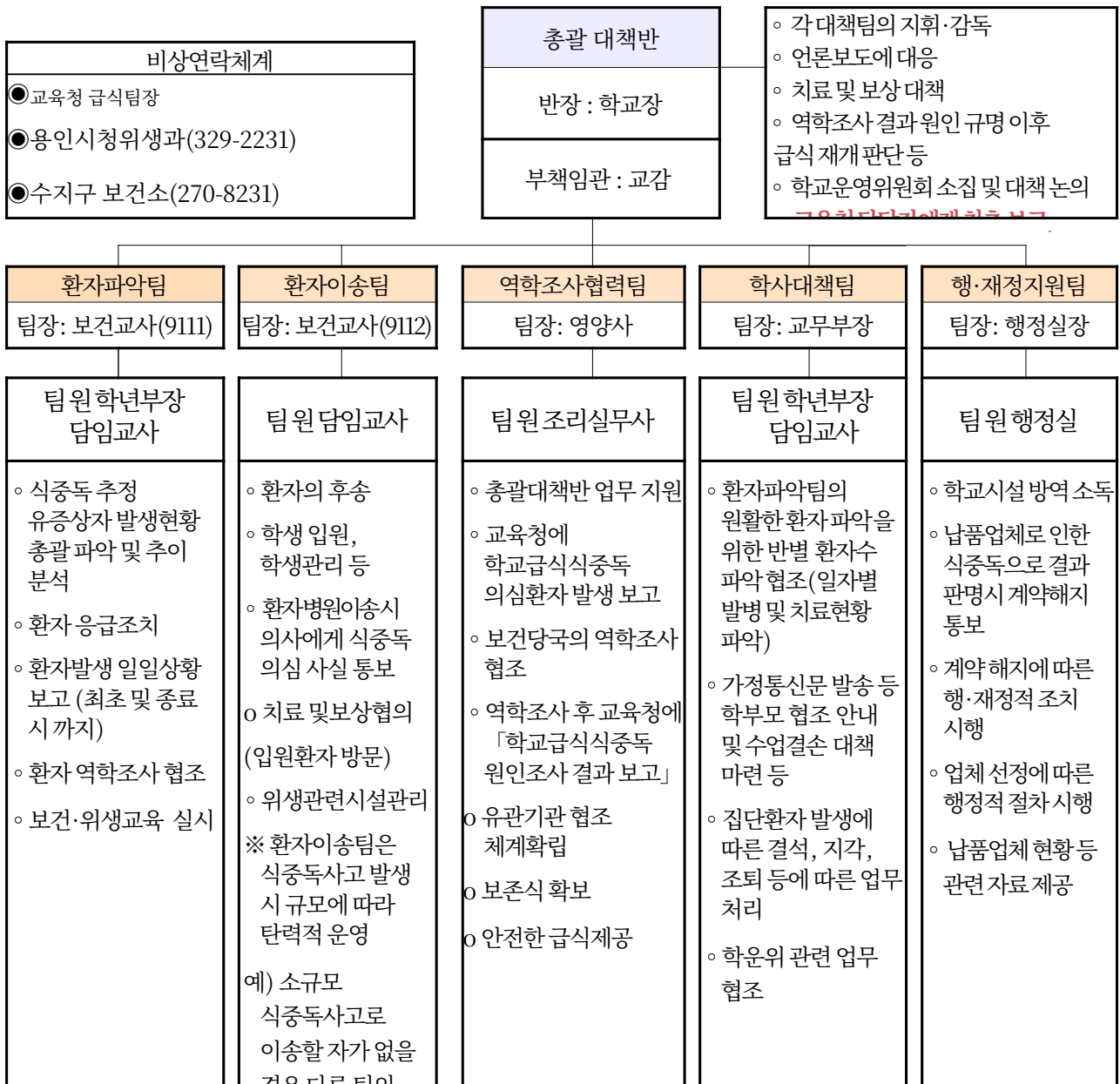
1) 평상시



2) 유사시



나. 식중독비상대책반 조직표 (별도계획수립)



다. 학교 인근 유관기관

구분	기관명	연락처	거리
소방서	용인소방서수지119안전센터	031-8021-0521	약 5분 (2.1km)
경찰 지구대	수지지구대	031-8021-8010	약 4분 (2km)
	상현지구대	031-8021-8030	약 8분 (2.4km)
파출소	신봉파출소	031-8021-8050	약 3분 (1.3km)
보건소	수지구 보건소	031-324-8912	약 5분 (1.7km)

라.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1)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현장체험학습 포함) 재난발생 시 대응 절차



2) 안전사고 관리 지침



3) 학교 안전사고 보고체계 (학교 →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교육부)

가) (동시보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을 위해 사고현장에서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교육부에 동시 보고



나) (보고방법) 현장사고 상황파악 후 교육부 안전 대표메일*을 통하여 사고 보고(긴급한 사안일 경우 즉시 보고)

* moe119@korea.kr 메일로 사고 보고 시 담당자 개인메일로 자동 전송

다) (보고기준)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교육활동 중 발생) 병원치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발생)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의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에서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및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거나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마. 학교 비상대책반 구성

1) 교직원,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 (교무실 보관)

2) 지역재난대응 및 응급구조기관 비상연락망

- 지역의 재난대응기관, 응급의료기관, 치안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재난관련 문서에 작성

3) 시설관리 및 물품공급업체 비상연락처(행정실 보관)

관련 시설	관련 업체명
보안경비	캡○(무인전자)
전기	이○전설
가스	삼○○(도시가스)
승강기	동○엘리베이터
식자재 공급	경기도○○○진흥원(친환경)

4) 경보발령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구분	주 수단	보조 수단	정전 시 수단	비고
접수(외부)	재난위험경보사이렌	유선	가두방송	용인시 수지구청
전파(내부)	학교 내 방송	음성방송, 타종	타종, 메가폰, 육성	방송실, 교무실

바. 비상시 교직원 일반 책무

■ 학교장

- 학교장은 직접 사고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책임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
- 학교장은 항상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갖지만, 재난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 수준의 활동, 외부의 협력기관이나 학부모와의 접촉 등에 집중할 수 있음
- 학교장은 교육청 재난 담당자와 학교의 사고지휘관간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

■ 사고지휘관 (교감/행정실장, 학교안전책임관)

- 본 재난대응계획에 기술된 행동과 절차에 기초하여 재난의 관리에 관한 모든 절차를 전반적으로 지휘
- 학생, 교직원,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들을 지시
- 재난대응 행동수칙(기능부속서와 재난유형별 상세부속서 참조)의 실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림
- 응급의료로 인해 학생, 교직원, 개인(방문객 등)을 긴급하게 후송하는 수단을 마련
- 재난대응기관의 전문인력들과 협력(재난의 유형에 따라 소방관, 경찰관, 응급구조대원과 같은 재난대응기관의 전문인력들이 사고현장에 대한 지휘권한을 갖는다)
- 학교장과 교육청의 관리자들에게 재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 교사

-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도
- 재난대응 프로토콜이 실행되는 상황에서 학생, 교직원, 개인(방문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 서면, 교내방송, 인터콤, 개인휴대전화, 신호 등을 통해 전달받은 지시에 따라 재난대응 프로토콜에 따라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들을 건물 바깥이나 건물 내부 집합 장소로의 이동을 지도
-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적절한 행동을 실행 지시
- 학생들을 건물 외부나 내부의 집합장소 또는 학교 밖의 지정된 대피지역의 학생의 인원 확인
- 실종된 학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고지휘관에게 즉시 보고
-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에 의해 지시사항을 실행
- 부상학생이 보건교사나 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자에게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필요 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본교의 교직원들은 기본소생술과 응급처치에 관한 공인자격의 취득을 위한 훈련에 참여

■ 보조교사

-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한 책임

■ 보건교사

-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를 실행
- 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자들에 의한 응급처치의 실행을 감독
- 응급처치와 학교응급의료체계를 구축

■ 기능직원(건물관리 용역업체 직원 포함)/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 건물, 시설, 기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고, 사고지휘관 또는 관련자에게 보고
- 가스, 수도, 전기의 메인 밸브를 통제함으로써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필요한 경우 건물, 시설물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
- 재난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필요한 물품의 관리, 사용, 보급을 지원
- 사고지휘관이 학교 건물과 시설의 피해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사무직원

-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대응 관련자들과 필요한 정보를 보를 주고받는 역할을 수행
- 학교의 중요한 기록물과 문서들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사고지휘관이나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들에 의한 지시사항을 실행
- 학교장과 재난관련 정책결정권자들을 지원
-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재난 발생 시, 미디어를 통한 재난방송을 청취
- 필요 시, 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을 수행

■ 급식/식당 서비스 담당자

- 사고가 일어나는 동안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여 제공
-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실행

■ 강사 등

-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의 요청에 따른 보고와 지시사항을 실행

■ 학생

- 재난대응훈련은 물론이고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는 동안 자신들이 받은 지시에 따라 행동
- 재난 대응 시 자신과 타인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학습
- 재난 발생 상황을 목격하는 경우, 방관자로 행동하지 않고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
- 자연적, 기술적, 인적 유해위험요인들과 이와 관련된 예방, 경감, 대비 조치들에 대한 인지역량을 개발
- 학교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대응, 복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게)

■ 학부모/보호자

- 학교안전, 폭력예방, 재난 대비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이를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

- 재난에 대한 학교의 대비역량 강화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
- 재난과 관련하여 학교로부터 요청 받은 정보를 학교에 제공
- 학교에서 교육 또는 훈련 받은 재난대응행동을 가정에서도 연습
- 학교가 재난을 직면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해야 할 역할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해

(출처 : 「학교 현장 실전대비 훈련계획의 수립과 실행 가이드, 교육부

IV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

교육활동 안전 대책

가. 학생 안전교육 계획

중점활동	추진내용	횟수	대상	시기	담당	비고
안전교육	안전교육 연간계획 수립	1회	1-6학년	2월-3월	담당교사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7대 안전교육 운영	수시	1-6학년	3월-12월	담임교사	교육과정 반영
	학교안전사고 대응조치 매뉴얼 활용 교직원 연수 실시	1회	교직원	3월	담당교사	
	학교안전주간 운영	3회	1-6학년	3월, 7월, 12월	담임교사	
	교육활동 참여자 안전교육	연 1회	교육활동참여자	3월	담당교사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수시	1-6학년	3월-12월	담임교사 담당교사	교통안전교육 신청 및 선정시
	일반 교통안전 교육	수시	1-6학년	3월-12월	담임교사	교육과정 반영
소방안전	소화기 사용 방법 및 모의 소방 대피 훈련 (학급별 학교안전주간에 운영)	1회	1-6학년	3월	담임교사 담당교사	
	합동 소방훈련	1회		7월	담임교사 담당교사	소방서 협조
재난안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회	1-6학년	10월	담당교사 담임교사	시행 공문에 따라 운영
	재난대비 안전교육	수시	1-6학년	3월-12월	담임교사	교육과정 반영
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 예방교육	수시	1-6학년	분기별 1회이상	담당교사 담임교사	교육과정 반영
성폭력 예방	성폭력 예방교육	4차시	1-6학년	3월-12월	보건교사 담임교사	보건계획 및 교육과정
약물 인터넷 중독 예방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학년별 계획	1-6학년	3월-12월	담당교사 담임교사	교육과정 반영
	흡연 음주 예방교육	학년별 계획	1-6학년	3월-12월	보건교사 담임교사	교육과정 반영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학년별 계획	1-6학년	3월-12월	보건교사 담임교사	교육과정 반영
폭력 및 신변 안전	아동학대 예방, 실종 유괴예방 교육	학년별 계획	1-6학년	3월-12월	보건교사 담임교사	교육과정 반영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학년별 계획	1-6학년	3월-12월	보건교사 담임교사	보건계획 및 교육과정
		3차시 이상	교직원	3월-12월		
안심 알리미	안심알리미 서비스 계약	1회	희망 학생	2~3월	담당교사 행정실	무료/유료 대상 확인
CCTV 활용	CCTV 운영 및 시설관리	수시	교내 출입자	3월-12월	담당교사 행정실	

※ 운영 횟수 및 시기 등은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되어 운영될 수 있음.

나. 유형별 안전교육 실시

생활안전교육	- 교내 안전 수칙 준수 강조 • 실습 위주의 학습(체육, 과학 등) 시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후 수업 실시 • 아침 자습 시간, 휴식 시간, 점심시간, 청소 시간 등 교사가 현장을 이석할 경우 학생들에게 지켜야 할 안전 수칙 교육 - 복도 및 계단의 안전한 통행 방법 교육 - 우측보행, 뛰지 않기 등 - 조기 등교 및 이동 수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 학교 안전관리점검표를 활용한 주기적인 점검 실시 - 2층 이상 교실의 유리창 청소 금지 및 난간에서 장난하지 않기 지도 - 비오는 날 시멘트바닥에서 놀지 않기 지도 - 특별실 이동시 뛰지 않기, 연필 휘두르지 않기, 소리 지르지 않기 등의 생활 지도 - 운동장사용지도철저: 안전하게 놀기, 축구공이 담을 넘어가는 경우차조심하기 - 청소 및 분리수거는 학급 담임의 입장 지도 - 화장실 사용 시 불일 후 물 내리기, 문을 발로 차지 않기 등의 화장실 예절 준수 - 다목적실 사용 시 공놀이 자제 - 음악실 이용 시 리코더, 단소 수업 시 품에 안고 입실, - 장구채, 북채 등을 사용할 때의 안전 지도 교육 강화
교통안전교육	- 등·하교 시 현장 지도 (녹색학부모회, 학부모폴리스, 배움터지킴이, 학생보호인력, 보행안전지도사 등) - 학원차량 탑승 시 안전벨트 착용 지도 철저 - 다양한 교통안전 교육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안전 지도 강화 -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및 녹색학부모회 운영 - 자전거 통학 금지 - 일과 중 차량 통행금지로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 주기적인 교통안전 교육과 현장지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교육 강화 -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 파악 및 대처 방법 지도 • 무단횡단하지 않기 •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횡단하야 함
폭력 및 신변안전교육	- 유괴범들은 친절하게 접근한다는 점 강조 - 외출 시 행선지 밝히기, 친한 친구 연락처 부모님께 알려두기 - 부모의 허락 없이 낯선 사람 및 아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지도하기 - 강제로 데려가려 하면 분명하고 완강하게 저항하도록 평소에 훈련 • 소리치는 것이 생명에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지를 분별하도록 교육 - 역할 놀이(실종·유괴범들의 접근 방식 상황 재연)를 통한 예방교육
재난안전교육	- 학생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관리 점검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요령 교육 •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 교육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적극 참여 • 재난 시 안전 행동 및 대피요령 교육 • 시청각 교육을 통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적용 • 지역 소방서와 연계한 화재예방 교육 적극 권장
약물·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 학년 수준을 고려하여 알맞은 지도 계획 수립 및 실시 - 다양한 사례 중심 교육으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 - 약물 중독: 마약류 폐해 및 예방, 흡연 폐해 및 예방, 음주 폐해 및 예방, 고카페인 식품 폐해 및 예방 - 사이버 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관련 지도 실시

직업안전교육	- 직업 안전 의식의 중요성, 직업 안전 문화, 산업재해의 의미와 산업재해의 예방 - 직업병의 의미 알기, 직업병의 예방과 대책 - 보호구 착용의 필요성(생활 안전 및 교통안전 영역과 연계하여 지도) - 진로교육 주간 및 관련 교과와 연계하여 지도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 학교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체계적 안전 지도 계획 수립 및 실시 - 학생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 충분한 사전 조사, 자료 수집, 현장 답사, 안전 점검, 사전 학생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 - 체험학습 시 학생의 장거리 이동 시 관할 경찰관서에 보호 요청 - 방학 중 장기 여행 시 교통사고 예방 교육 실시(가정통신문 등 활용) - 학생 일탈 행동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 교육 수립 실시 - 체험학습 시 안전조끼, 반티, 모자 등 구입 예산 확보 노력
체육활동 안전교육	- 교과 또는 창체 및 동아리 활동 시 수시 안전 지도 실시 - 학교 자체 계획 수립 및 실시
생명존중 교육	- 정서 행동 특성 검사 실시 계획 수립 및 실시 - 교육과정 연계 생명존중 교육 주간 운영 - 생명존중 및 위기 관리 계획 수립 및 실시
생존수영 안전교육	- 대상학년: 3학년, 4학년 - 내용: 수상 안전, 생존수영 및 영법 기초 교육 - 운영시간: 10시간 이상 - 별도 계획 수립 운영
물놀이 안전교육	- 물놀이 안전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 실시 (6·7월 집중 운영) - 응급구호법(인공호흡법, 심폐소생술, 구명동의 착용법 등) 교육 - 학부모, 교사 등 성인과 동행하거나 구조요원 있는 곳 활용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등에 대한 비디오 상영 - 물놀이와 관련한 관련법 등 위법 사항에 대한 의법 조치 내용 소개 등 - 학교 교육과정(관련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활용한 구조구급 및 상황대처 요령 교육
겨울철 빙상 안전교육 (한파 대비 포함)	- 해빙기 위험지역 빙상놀이 금지 지도 - 스키장 등 겨울철 레저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 교육 - 익사사고 위험지역 집중관리 및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 - 폭설 및 겨울철 갑작스런 기후 변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지도 - 겨울철 자연재난(한파) 대비 교육
가정의 안전 점검 정착 및 학부모 교육	- 가정통신문 발송을 통한 학부모 안전교육 실시 - 매월 나침반 가정연계 교육 자료 안내 - 매월 학교 안전사고 예보 안내 - 유괴·납치에 대처하여 부모가 해야 할 일 • 휴대폰에 「긴급 구조 버튼」 설정 • 출필고반필면(出必告反必面) 지도하기- 들어오고 나갈 때 반드시 부모님께 알리기 • 휴대전화 소지 학생에게 「자녀 위치 알림」 서비스 신청 • 자녀 혼자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 안전을 위한 행동수칙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 노출이 심하거나 화려한 복장 피하고 검소한 옷차림 지도
학교 안전 점검의 날 운영	- 매월 4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실시 - 취약 요인 중심으로 월별 중점 점검 사항 선정 - 시설 점검 시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합동 점검 실시 권장
나를 지키고 침착하게 대처하려면 반드시	- 교육대상 : 학생 및 교직원 전체 - 교육내용 : 화재안전, 보건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5개 분야 - 운영방법 * 조·종례 시간 및 자투리 시간 활용

익혀야하는 “나·침·반 5분안전교육”	* 요일별 주제운영 예: 월)화재안전, 화)보건안전, 수)재난안전, 목) 생활안전, 금)교통안전 - 교육자료 이용방법 : 교내담임교사에게 배포하여 모든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

다.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계획

- 다중밀집 행사 시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교육행사 진행 시 학생·교직원, 사람들 간 대형간격 유지하는 등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철저

- 체육대회, 입학 및 졸업식, 현장학습, 교외 행사장 방문 등에서 학생·교직원, 사람들 간 대형 간격을 유지하기
- 사람이 많이 밀집된 곳에서는 앞 사람과의 간격 유지하며 걷기
- 움직일 수 없거나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 장소 벗어나기
- 스마트폰을 보거나 주의산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전방 주시하며 걷기
-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주변 사람에게 큰소리로 상황 알리기
- 팔짱을 끼거나 가방, 옷 등으로 흉부 보호하기
- 넘어졌을 때 위험성 줄이기 위해 몸을 작은 자세로 웅크려 보호하기
- 운동화처럼 편하고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신발 신기

- 사고 발생 시 119신고 및 응급조치 등 상황에 맞는 응급조치 실시

라. 학생 생활 안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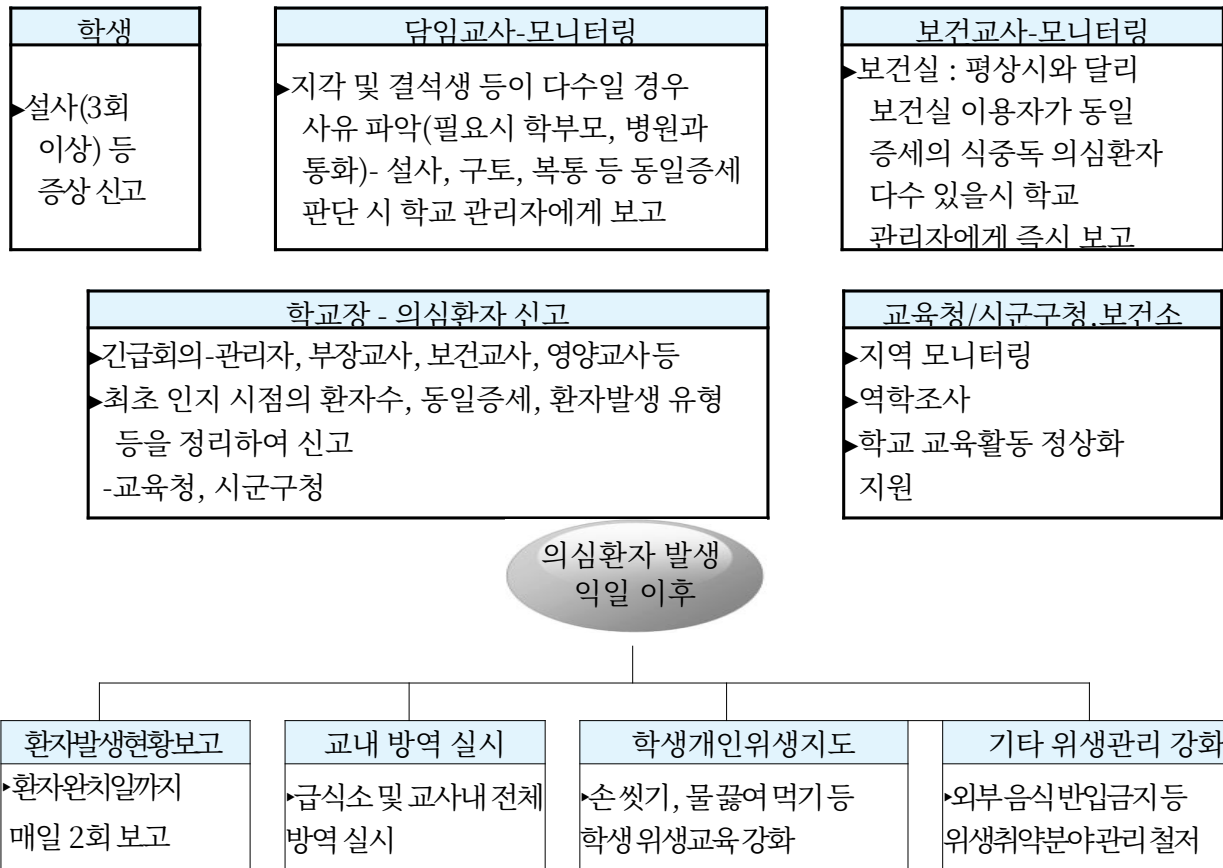
< 과학실 안전 관리 >

가열 기구	불을 사용할 때는 주변에 있는 화학 약품이나 물건을 치운다. 실험실에는 소화기와 모래주머니를 비치한다. 뜨거운 물체를 다룰 때는 장갑을 끼고 집게를 사용한다. 알코올램프에 불을 붙일 때에는 성냥이나 가스점화기를 사용하고, 불은 심지 옆쪽에서 스치듯이 붙인다. 불을 끌 때에는 입으로 불지 않고 뚜껑을 옆에서부터 덮어 끄고, 잠시 후 뚜껑을 열어 불이 꺼진 걸 확인한다. 알코올램프가 넘어져 불이 붙었을 때는 불붙기 쉬운 물체를 치우고, 담요같이 두껍고 큰 천을 사용하여 덮는다. 가열 기구에 의하여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경우, 화상부위를 수돗물에 담근 뒤에 올리브유나 바세린 등을 바르는 것이 좋다. 어떤 물질이든 밀폐된 용기에 넣고 가열해서는 안 된다.
유리 기구	금이가거나 깨진 유리 기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깨진 유리 기구를 치울 때에는 장갑을 낀다. 유리 기구에 시약을 따를 때에는 벽을 따라 흘러내리도록 한다. 유리 기구에 다친 경우는 핀셋으로 유리 조각을 제거한 다음, 물로 씻고 보건실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
실험 약품	화학약품은 절대 맛을 보지 않는다. 약품이 피부나 옷에 닿지 않도록 한다. 약품의 냄새를 맡을 때에는 손으로 바람을 일으켜 맡고, 직접 가까이에 대고 냄새를 맡지 않도록 한다. 약품을 사용하고 남은 것을 다시 시약병에 넣지 않는다. 약품은 반드시 시약 이름과 제조 일자가 기록된 라벨을 붙이고 시약병에 보관하도록 한다.
전기 안전	건전지에 도선만 연결하는 경우, 또는 회로에 큰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스위치를 이용하여 필요한 순간에만 전류를 흐르도록 한다. 전구는 적정 전압을 확인한 뒤에 사용한다. 콘센트에 금속 물체를 끼우지 않도록 하고, 피복이 벗겨진 전선은 사용하지 않는다. 플러그를 끼울 때 금속 부분을 만지지 않도록 하고, 한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지 않는다.
생물과 관련된 안전	생물을 해부하거나 직접 만질 때에는 보안경과 부드러운 비닐장갑을 착용한다. 무해하다고 판명된 생물을 직접 만질 때에는 반드시 손을 먼저 깨끗이 씻는다. 동물에게 물리거나 식물에 찔려 상처가 났을 경우에는 즉시 소독하고 응급처치를 한다. 특정 생물에 민감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는 뒤 관찰이나 실험을 실시하거나 대체 생물을 마련한다. 강, 호수, 연못, 숲 등의 현장학습을 할 경우 반드시 2인 이상의 집단으로 활동하게 하고, 비상시에는 신속히 지도교사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실 (실험실) 안전 수칙	실험실에서는 절대로 뛰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실험복을 입지 않는 실험이어도 소매가 넓은 옷은 실험에 방해가 되므로 입지 않는다. 긴 머리는 머리를 뒤쪽으로 묶고 실험에 참여한다. 절대로 혼자 실험하지 않는다(위급한 상황 시 대처가 어려움) 시약병은 반드시 두 손으로 옮기고, 한 손은 병의 몸통을 잡고 다른 한 손은 병 아래를 받쳐 들도록 한다. 모든 실험 기구의 조작 및 정리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사고 발생시 곧바로 선생님께 알린다.

< 급식실 안전관리 >

1) 평소 교내 식중독 대응 감시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신속한 파악 및 치료조치

- 집단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으로 의심 시(평상시와 다른 양상의 설사 3회 이상, 복통, 구토, 발열 등 식중독 증세의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 환자 2인 이상 발생) 학교장은 교육청 및 시·군·구청에 즉시 신고



< 돌봄교실 및 방과후 안전관리 <별도 계획 수립> >

귀가 안전 수칙	
동행귀가 원칙	안전 귀가 안내장 발송하여 동행귀가 원칙(아동이 혼자 귀가하지 않음) <u>대리도해은 귀자 대리도해이 겨은 보후자이 도이하에 귀가 조키</u>
안전 경비 강화	돌봄교실 주변과 학교 곳곳에 CCTV를 설치 <u>돌봄교실 출입구에는 보안을 위한 잠금장치와 인터폰이 설치</u>
비상시 연락 체계	학부모 ↔ 돌봄전담사 ≡ 비상전화(112, 182(전국미아신고센터)), 관리자(교장, 교감) ≡ 교육청 상황보고

< 방과후 교실의 학생 안전 관리 >

1) 대상 : 수강아동

2) 담당 : 지도강사

3) 내용 : 특기적성 강사들에게 안전지도 및 수업 교실 관리 연수 실시

가) 특기적성 교육 후 하교 시 함께 집으로 바로가기 지도

나) 교통 신호 지키기

다) 수강 아동 결석 시 학부모 전화 확인 및 학교 담당교사에게 알리기

라) 수업 중 건강 상태 살피기, 도구 사용 시 안전지도

마) 화장실 갈 때 혼자 보내지 않기

4) 지도강사 안전지도 연수 : 2월, 9월 실시

마. 안전약자(요양호자) 안전지도

1) 요보호학생의 개념

요보호학생이란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일반 학생들과 달리 교사의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이들 학생들은 선·후천적인 지병을 보유하고 있거나, 정신적인 병적 소인이 있어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요보호학생의 예상치 못한 발병, 발작 등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요보호학생을 포함한 학생들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도 별도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2) 요보호학생 보호업무 개요

신학기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건강문제를 가진 학생을 파악하고 개별면담과 정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해 요보호학생이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응급상황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학교 차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체 교직원에게 요보호 학생 명단을 배부하는 것과 함께 학생 주요 건강이상 사항, 유의하여 관찰을 요하는 사항, 담당교사 조언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면서 건강이상 학생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한다.

요보호학생 기록은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관리토록 한다.

기록지에는 전화번호, 지정병원·투약정보 등 의료 정보, 기타 유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직원은 요보호학생의 개인 신상, 병력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관리가 필요하다.

3) 요보호학생 관리계획 및 상담지도

각반 요보호자 명단을 전체 교사의 교무수첩 기재, 교내 전산망을 통한 자료 공유 및 교사 연수 시 안내 등을 통해 요보호학생 안전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학년 초에 확인되지 않은 경우나 현재 이후에 발병한 환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명단을 파악하여 관리한다.

신체적 결함 때문에 심리적으로 손상을 받기 쉬운 상태이므로 급우들에게 장애에 대해 설명을 하여, 놀리거나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급우들에 대한 설명과 도움 요청은 요보호학생의 부모가 공개를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이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보호학생에 대한 이해와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 주어야 한다. 체육, 외부 체험활동 등 활동량이 많은 시간에 특히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고, 보건교육을 통하여 사고 방지, 시력 보호, 예방접종 등의 필요성을 가르쳐준다.

학부모, 담임교사, 보건교사와 수시면담을 통하여 학생의 건강상태나 심리상태를 파악하여 관리한다. 의학적 치료를 하지 않는 학습 장애, 언어 장애나, 정신적 문제를 가진 학생의 경우는 상담교사와 협조하여 학교 적응 등의 전문 상담을 실시한다.

계속적인 추후관리를 실시하여 건전한 학교생활 속에서 스스로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요보호학생의 연락처 변경 시 보건실로 통보한다. 응급상황 시 요보호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출처 :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길라잡이

바. 학교 안전 관련 학부모 연계

- 연간 안전관리계획 학교홈페이지 공개
- 각종 안전 업무 관련 학부모 자원봉사자 모집(녹색어머니, 학부모폴리스 등)
- 건강 이상 학생 학교 통보
- 안전사고 보상제도 안내 등

1) 녹색학부모회 운영(별도계획 수립)

가) 대상: 1~6학년 학부모

나) 방법: 1일 8명 (매일 오전 8시 20분 - 9시 00분)

-운영시간 및 인원은 후문 개방 여부, 학사 일정, 등교 시간 변경 등에 의해 변경 가능

다) 활동위치

	① 태영데시앙 1차 105동과 103동 사이 단지 밖 횡단보도
	② 정평교 앞 에이스부동산 방면 횡단보도
	③ 한일타운빌라 101동 앞 횡단보도 (한일타운 빌라 앞쪽)
	⑥ 롯데캐슬골드 110동과 112동 사이 횡단보도 (롯데캐슬 앞쪽)
	⑦ 롯데캐슬골드 후문 앞 횡단보도
	⑧ 태영데시앙1차 105동 맞은편 (C2베이커리 옆) 오피스텔 주차장 횡단보도
	⑨ e편한세상 수지아파트 공공보행로
	⑨ e편한세상 수지아파트 공공보행로
	④ e편한세상 수지아파트 후문 앞 횡단보도
	⑤ 수지이스턴팰리스 아파트와 학교 사이 횡단보도
노인봉사 활동 없는 날 추가 장소	⑩ 수지초 정문 횡단보도
	⑪ 수지요양병원과 수지초 후문 사이 횡단보도

2) 학부모폴리스 운영(별도계획 수립)

가) 대상 : 1~6학년 학부모(1개조 1~2명씩)

나) 방법 : 하교시 교통지도 및 안전지도

다) 시간 : 매주 화, 목 (13시 30분~ 14시 30분, 1시간)

- 운영시간은 학사 일정 및 하교 시간 변경 등에 의해 변경 가능

라) 활동장소 : 학교 주변 및 정문, 후문 인근

사. 통학 안전지도 및 교내 차량 통행 관리

1) 통학 안전지도

가) 마스터키(비상열쇠) 비치현황 : 행정실

나)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실에 마스터키(비상열쇠)를 상시 비치

다) 행정실장은 분기별로 마스터키(비상열쇠)를 점검하고, 캐비닛 보관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함

라) 보행안전지도사(워킹스쿨버스) : 1, 2학년 학생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등학교 보행안전지도사 배치

2) 교내 차량 통제 및 주차 관리 방침

가)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차량의 경우 교내 진입을 최소화하도록 안내

나) 교직원, 장애인, 방문객에 대한 주차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함

특히 장애인 주차공간의 경우 이용자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위치를 적절하게 변경

다) 보행자의 흐름과 차량흐름이 상충하는(traffic conflict) 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

라) 지역 관련 기관(경찰서 및 파출소)과 연계하여 안전사고 및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

마) 교내 차량 서행 및 통행 속도(10km/h) 준수

아. 안전사고 예방 및 치료체계(보건)

보건실 설치 및 운영 현황		
현황	1,3,5 보건실, 2,4,6 보건실 (2개 실) / 보건교사 2명	비고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계획	- 연간 20차시 창체 및 관련 교과에서 실시 - 4차시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 - 1,2,3,4,6학년은 담임교사가 실시 - 5학년은 담임교사와 보건교사가 함께 실시 - 외부강사에 의한 협력 수업(성폭력 예방교육) * 3,4학년 집합교육(연 2회, 시청각실) * 5,6학년 반별 교육(연 2회, 각 학급)	교육과정 운영따라 변경 가능
요보호학생 관리	- 학년 초 요보호학생들 조사하여, 주의 및 관리요령 사항 모든 교직원들에게 공지 (비밀유지 관리 포함)	보건계획
보건실 직무대행자의 지정 ■ 행정실무사: 안** ■ 행정실무사: 서**	- 보건교사가 출장 등으로 인한 부재 시 응급처치 담당 * 교무실에 구급함을 비치하고 간단한 응급처치 실시 * 응급환자 발생 시 최초 발견자가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 실시 * 내복약 등 의약품 사용 자제 * 증상이 지속될 경우 담임교사를 통해 보호자에게 연락 후 귀가 조치 및 진료 안내 * 5학년 보건수업 시 응급환자 발생 등으로 보건실 내 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 5학년 담임교사는 보건실에서 교내 응급환자 관리 및 대처를 위해 협조. 단, 약물투여등의료인 업무는배제하며 전문적인 응급처치는 보건교사가 담당	보건계획

안전사고 관리 및 재난 대응

가. 안전사고 관리 지침(학교 응급의료 관리)

1) 개념

가) 응급의료와 응급처치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취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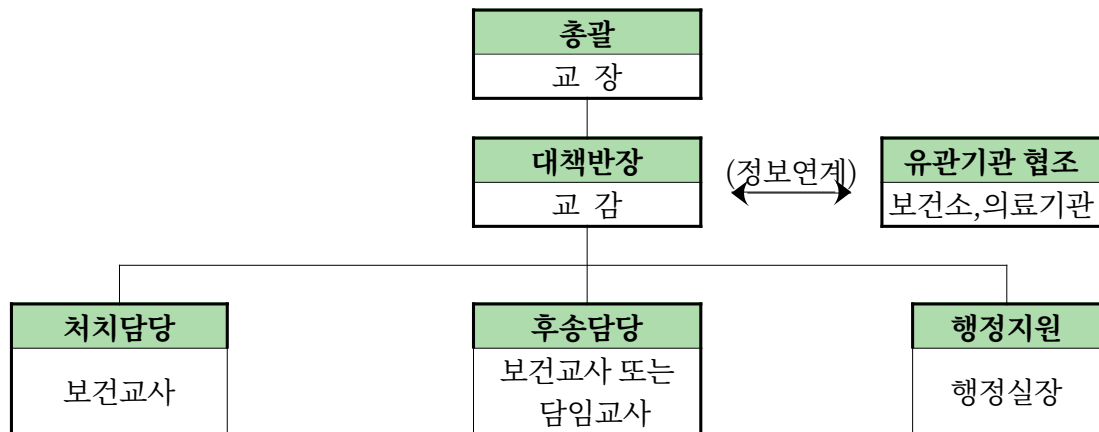
응급처치(First-Aid)란 응급의료 행위의 일종으로 생사여부의 기로에서 행하는 기본소생술(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기도폐쇄), 그 밖에 신체에 발생한 각종 질환과 외상에 대한 현장에서 행하는 간단한 치료로 구분된다.

나) 학교 응급체계

학교 응급체계란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발생한 응급상황으로부터 사고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등의 관리체계를 말한다.

이 장에서 말하는 보건교사란 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를 의미하며,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학교장의 사무분장 권한에 따라 지정된 보건업무 담당교사를 의미한다.

2) 체계



응급구조체계 조직도

학교장은 총괄책임자가 되어 응급구조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한다.

교감은 대책반장이 되어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조치를 지휘·감독한다.

처치담당은 보건교사로 하되 학교 내 초기 응급처치 및 환자 이송 전까지의 응급처치를 담당한다. 심폐소생술 연수 이수자가 있는 경우 보조 역할이 가능하다.

후송담당은 학교에 따라 이송 담당 교직원의 부재를 예상하여 2인 이상으로 지정하고,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학년부장교사)는 이송반에 포함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이송에 반드시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지원반은 응급학생 처치 및 이송 시 발생하는 치료비, 보상 등에 필요한 행정조치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학년 초 「학생건강조사」 설문 시 학교 응급환자 관리체계에 대한 안내문과 함께 응급사고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병원이송에 관한 동의서 징구
- 학부모 연락처(1차), 학부모 권한 대행자 및 연락처(2차, 3차)
 - 요보호학생의 경우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
 - 학부모에게 연락이 안 될 경우, 학교나 사고 현장의 인근 병원 또는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
 - 설문조사지 활용에 대한 동의서 미제출자는 동의로 간주

응급사고 대비 사전 동의서 징구

3) 응급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응급환자 발생 시 상황판단(check), 도움요청(call), 응급처치(care)의 단계로 응급처리를 시행한다.

가) 상황판단(CHECK)

<응급상황여부 확인하기> 최초발견자(교직원)는 환자 상태, 주변환경 파악 등 응급상황에 대하여 신속히 파악한 후, 즉시 보건교사에게 연락을 취하고 응급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119에도 도움 요청을 동시에 취한다.

<환자상태 파악하기> 보건교사는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응급처치 및 이송준비를 한다.

나) 도움요청(CALL)

<응급구조 요청하기>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119에 도움을 요청한다.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
- 기도폐쇄, 심한 호흡곤란, 맥박이 약하거나 없을 때, 출혈이 심한 경우, 의식이 없을 때, 개방골절,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등
- 병원 이송도중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송도중 계속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경우
- 병원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경우
- 기타 판단이 무충한 경우는 1220 또는 119에 전화 문의

119 응급구조 차량 이송 요청 기준

<응급구조체계 가동하기> 학교안전계획에 따른 응급구조체계에 따라 응급처치와 관리를 수행한다.

다) 응급처치(CARE)

<안전한 장소로 환자 옮기기> 가능한 경우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되, 무리한 움직임을 피하고, 전문가의 응급처치 요령에 따른다.

<응급처치 시행하기>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전화상담원의 지시에 따른다.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지시에 의한 응급처치는 법적 문제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119 구조대가 오기 전에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건교사 및 심폐소생술 가능자가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병원으로 환자 이송하기> 환자의 증상 정도에 따라 학교에서 가까운 응급의료센터, 학교 협약 병원 또는 사전에 파악된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한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치가 가능한 간단한 상해는 보건실 처치 후 부모에게 연락하고 귀가 조치한다.

<기록 및 추후 결과 확인하기> 전문가 인계 및 병원 이송까지의 과정을 6하 원칙에 따라 ‘응급환자 기록지’에 기록·보관한다. 사고발생 최초발견교사(담임, 현장임장교사 등)는 사고 발생과 관련한 내용을 기록한다.



최초발견자 담임교사 ▶ 학부모, 교감 ▶ 교장
 보건(업무담당)교사 ↘

※ 응급사고 시 보고체계 및 담당자 연락처를 모든 교실 및 학교 공공장소에 부착

구팀 작성

나. 재난 대응 지침

재난 발생 시 <학교현장 재난 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교육부, 2018)>에 따라 대피 실시

V

학교 안전교육의 내실화

1. 학생 대상 안전교육 실시 계획

가. 2026학년도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 실시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33호, 2023. 10. 16. 일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2026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수립에 반영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단위: 단위활동, 차시)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약물 중독 예방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시간	초등 학교	12	11	8	5	5	6	2	2
횟수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나. 생활 속 안전위험 분야 예방교육 강화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실시

나를 지키고, 침착하게 대처하려면, 반드시 익혀야 하는 5분 안전교육	
대상	전교생 (각 학급)
운영기간	2026.3. ~ 2026.12.
운영시간	매일 아침 시간 또는 자투리 시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활용
교육내용	예시> 월) 화재안전 화) 보건안전 수) 재난안전 목) 생활안전 금) 교통안전 ※ 학급 또는 사회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활용자료	경기도교육청에서 개발하여 배부된 동영상자료, 활동지, 교사용 tip 등의 안전자료 활용

다. 학생 참여형 안전 실천

- 교육과정 내 교과 및 창체 활동, 학교 안전주간, 재난 대응 훈련 등에서 다양한 방법 (안전 캠페인, 토의토론 등)으로 실시

라. 생존수영 실시 계획 (별도계획 수립)

대상	내용	시기	비고
3, 4학년	생존수영 및 영법 기초 등	5월~6월	이론 및 실기 교육

※ 운영 시기, 방법 등은 별도 계획 수립하여 운영

마. 안전 점검의 날 운영

- 매월 4일(공휴일은 전일이나 익일 실시) 안전 점검의 날로 정하여 학교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 (행정실)하고, 학생들에게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습관을 형성하게 한다.

바. 자율 안전 점검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홍보 강화

- 시기별, 계절별 사고 발생 위험 분야에 대한 안전교육 점검 콘텐츠를 유치원 및 각 학급에 공유 및 활용하도록 안내

2.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계획

가. 교직원 대상 학교 안전 계획 연수 실시

- 1) 시기: 3월 중 학교안전주간에 실시
- 2) 내용: 학교 안전관련 전반적 내용

나.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 안내 및 관리

- 1) 학교,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교원, 직원은 매 3년마다 15시간의 안전교육 이수 (7대 안전영역 중 3개 이상의 영역 포함)
- 2) 연수인정범위: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의 집합/원격연수, 전문강사를 활용한 소속기관 자체 연수
 - 매년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성희롱 등 예방교육, 합동소방훈련의 경우에도 내부결재(등록부 서명)를 통해 인정 가능

다.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이수 안내 및 실시(보건-별도계획수립)

라. 교육활동 참여자 안전 연수: 연 1회 이상, 자체 연수 실시(연수자료 활용 등)

3. 재난대응훈련계획의 수립/배포와 실제훈련 (별도 계획 수립)

가. 학생 참여 및 학교 맞춤형 재난대응 훈련계획의 수립

- 1) 학교는 안전사고를 대비한 학생 참여 등 맞춤형 「재난대응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훈련(3월 안전교육주간, 학급별 모의 소방대피 훈련 실시)
- 2) 재난대응 훈련계획을 교육을 통해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나. 실제 상황을 가정한 맞춤형 대응훈련 시행 및 대피로 확보

- 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 실제 훈련 실시
 - 교원 유고 상황을 가정한 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학생중심 안전훈련 내실화 및 지진대비등 학생과 현장 중심의 안전 훈련 실시
 - 이론 및 메시지 행정에서 탈피, 현장지원 대책과 몸으로 체험하는 실질적 훈련 기반 마련(소화기 사용법, 대피호 위치 확인 등)
 - 재난 취약학생(유아·특수) 대피 및 훈련 강화
 - 안전생활 습관화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 학생 참여 강화
 - 주입식 훈련을 탈피, 체험 위주의 다양한 훈련 방법 적용
 - 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상황보고 및 전파 훈련 강화
 - 상황별 재난 단계별 교직원 상황 판단 및 보고, 조치능력 강화
 - 학교장 중심의 교직원 상황판단 회의와 실제훈련 병행 추진
 -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한 협업 대응능력 강화
- 2) 비상차량 이동 동선 점검 및 확보(불법주정차, 시설·구조물 이동 등)
- 3) 교실 등 실내의 복도, 계단 등 이동 통로에 상시 적치물 철거

VI 학교 시설 안전 점검 · 관리 · 조치

학교 시설 안전 점검

가. 매월 안전 점검의 날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6
- 관할 시도 교육청 지침에 따라 점검 실시

나.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안전 점검

- 관할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점검 실시

학교 시설 안전 관리 및 조치

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관리 및 조치

-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 2026 상반기 : 학교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점검 원격연수 및 행정조치 전달연수
- 2026 하반기 : 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시설 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실시 결과보고 서식 예시

가. 점검 일시 : 2026. . .

나. 학교 자체 개선 사항

	주요내용	투입 예산(천원)
1		
2		
계		

다. 개선 지원 요청 사항: 학교 ⇒ 교육(지원)청

	주요내용	추정 소요예산(천원)
1		
2		
계		

[붙임]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점검결과표 1부. 끝.

나. 개별 법령에 의한 학교시설물 관리

- 개별 법령에 의한 학교시설물 관리 계획을 작성

다. 학교 위험시설물 관리(2026학년도 기준)

구분	규격	수량	설치연도	설치장소	유지관리업체		비고
					업체명	연락처	

VII 학교 안전문화 확산

1. 안전 업무 관련 교직원간 협력 체계 구축

가. 안전 가치의 최우선적 인식 문화 확산

- 학교 안전의 가치는 안정적 교육활동 수행의 기본 전제가 되므로 제반 교육활동 계획 수립부터 실시해 이르기까지 최우선적으로 학교 안전의 가치를 고려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

나. 안전 업무 관련 교직원간 역할 명료화

- 학교장은 학교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교원과 직원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설정
- 학교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안전한 교육활동이 되도록 적극 노력
- ※ 학교안전은 담당 교원만으로는 업무추진이 어려우므로 교원과 직원 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

2. 학교안전 자가 점검표

- 학교구성원의 안전 관련 이행사항(기본계획 1호~6호)에 대한 “학교안전 자가점검표”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계획수립에 체크하여 작성

학교안전 자가점검표

기본계획 각호	법제도	세부점검내용	계획수립 ¹⁾		전년도 실적 ²⁾			추진실적 세부내용 ³⁾
			○	×	○	△	×	
1. 예방정책 의 기본방향 및 목표	기본계획, 지역계획, 학교계획	학교계획 수립 시 안전담당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는가?						
		학교계획에서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교직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학교안전계획의 취지와 목표를 학교실정에 맞게 적절히 설정하였는가?						
		우리 학교는 학교와 주변지역의 위험성을 파악한 후, 이에 적합한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학교안전계획은 교직원들 간에 명확히 공유되었는가?						
		안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시간, 정보, 인원, 예산등)과수행 절차는 파악되었는가?						
2. 교육활동 운영의 기본지침	학사일정별 학교안전	학사일정별 연간안전관리계획 <별첨6>은 각계절별 재난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체험과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계획하였는가?						
		안전학습 관련 콘텐츠는 적절하고 풍부하게 준비하였는가?						
		시기, 활동, 행사별로 발생하기 쉬운 사고나 취약 학생 혹은 구역에 파악하여 예방조치를 할 계획을 세웠는가?						
	외부체험활 동 안전	현장체험학습 계획 시 현장체험학습 지침 <별첨5>의 사항들을 교사들에게 공지하고, 계획에 게재하였는가?						
	학교주변 안전관리	학교안전의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지자체, 소방서, 경찰서등) 간 협력 계획이 마련되었는가?						
		스쿨존 정비 방법은 마련되었는가?						
	안전약자 안전대책	요양호자(안전약자)를 파악하고, 안전약자 안전대책 <별첨3> 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기본계획 각호	법제도	세부점검내용	계획수립 ¹⁾		전년도 실적 ²⁾			추진실적 세부내용 ³⁾
			○	×	○	△	×	
3. 학교안전 교육	예방 및 학교안전교육	안전교육 연간 계획표에서 학교와 학교 주변에 존재하는 위험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교육 계획에 포함시켰는가?						
		안전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교육에 포함 시켰는가?						
		학생 참여형 안전교육을 준비했는가?						
		안전교육 교사연수 연간계획은 준비 되었는가?						
		안전사고 유형별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교과 연계 방법이 수립되었는가?						
		안전 전문가 초빙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안전 전문가 초빙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정기훈련	학교구성원 모두 체험할 수 있는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훈련은 구체적 목표 및 평가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훈련은 체험형·토의형으로 수립하였는가?						
		학교에서 일어날 위험이 높은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재난대비훈련을 계획했는가?						
4. 학교시설 안전점검· 관리 및 안전조치	매월 안전점검의 날(제6조)	매월 안전점검의 날 <별첨10>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안전관리(제 7조)실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별첨11>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계획·실시하였는가?						
	CCTV 관리	CCTV 관리 업무 분장은 명확한가?						
5. 학교 안전문화 확산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기록하고 자료를 기록해서 공유하며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각종 안전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공유·적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자료는 정기적으로 갱신, 정비하여 손쉽게 찾아 쓸 수 있게 준비하였는가?						
		학교 구성원의 안전 관련 행동, 실천, 태도 등에 대해 인정과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학교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가?						
		학교안전은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확보될 수 있다는 가치관 확산을 위한 홍보·협업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안전관리활동에 따른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방안을 마련했는가?						
		학교구성원이 학교안전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했을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6. 기타 사항		재난과 학교안전사고의 보고와 보상에 관한 절차와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마련해 놓았는가?						

주) 1. 계획 수립 : ○ - 반영, × - 미반영

2. 전년도 실적 : ○ - 잘 추진했음, △ - 보통이다. × - 보통이하로 추진

3. 기본계획 각 호별로 전년도 해당학교의 주요 학교안전 추진 실적을 기재

VIII 안전사고 피해 회복

1. 학교안전공제회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구 분	업 무 처 리
학 생	사 고 발 생		• 학교안전사고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급식,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접촉에 의한 질병 등
학 교	사 고 통 지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 - www.schoolsafe.or.kr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 내부결재 후 통보버튼 눌러 공제회 전송
시 · 도	공 제 회 접 수		• 사고통지서 접수
학 생	치 료		• 병원치료
학 교 또는 학부모	공 제 급여 청 구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PC 및 스마트폰) - www.schoolsafe.or.kr - (학 교)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학부모)휴대폰 인증 후 로그인 • 사고통지서 조회 후 청구서 입력 • 해당지역 공제회 및 시스템에 첨부서류 제출 ※ 첨부서류 :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계산서, 50만원 이상시 진단서·등본 추가
시 · 도 공 제 회	공 제 회 접 수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결정
	지 급 완 료		•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내역 통보
학부모	심 사 청 구		• 공제회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시·도 공제회의 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재 심 사 청 구		• 보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2.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배상책임 공제급여 청구 절차

	구 분	업 무 처 리
피공제자 및 제3자	사고 발생	• 학교배상책임사고 - 교육활동 또는 학교시설물 관리업무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 및 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차량파손 피해 - 어린이놀이시설 하자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 학교급식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101조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 학교승강기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 학교 관리 하의 학생 휴대품 분실·파손 피해
학 교	사고 통지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 접속 - http://ssifins.or.kr:8001/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 사고등록 후 통보버튼 눌러 공제중앙회 전송
공제 중앙회	사고 접수	• 사고통지서 접수
피공제자 및 제3자	치료·수리	• 병원치료 및 파손물품 수리 진행
학 교 또는 피해자	공제급여 청 구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 접속(PC만 가능) - http://ssifins.or.kr:8001/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 사고통지서 조회 후 공제급여청구서 입력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에 증빙서류 첨부 ※ 진단서, 영수증, 수리내역서, 수리완료사진, 통장사본 등
공제 중앙회	청구 접수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결정
	지급 완료	•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내역 공문 통보
피해자	심사청구	• 공제중앙회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3. 학교안전사고 시 학생 심리지원

- WEE센터 연계 등 심리지원 프로그램 연계

1. 비상배낭의 마련과 관리

가. 비상배낭(트렁크) 비치를 통한 안전사고 대비

1) 학교 행정실에 비상배낭 상시 비치

- 행정실장은 분기별로 내용물을 점검·보완하고, 캐비닛 보관 등 보안·관리 철저
- 재난대응 훈련 시, 비상배낭 활용 훈련 포함

2) 행정실 비상배낭 구성

- 학교와 주변 위성사진 및 지도, 건물 도면(배치도, 평면도 및 각종 설비도면 등), 학생과 교직원 명단, 비상 열쇠, 화재경보기 작동법, 스프링클러 작동법, 설비(전기/가스/수도) 밸브 잠금 방법, 안전사고 지휘체계 및 연락처, 사고지휘본부/재난대응 및 지원기관 명단과 연락처, 학생 대피장소, 재난대응기술보유 교직원명단, 구급약품 배치 현황, 비상용 손전등, 지압붕대, 기타 비상시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와 장비 등

나. 현장체험학습 시에 활용

2. 수지초등학교 학교 및 건물 출입지점 안전관리, 방문객의 학교출입 방침과 절차 및 교내차량통행및주차관리방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학교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 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보호인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5에 규정된 인력으로서,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민간경비(주간) 등 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인력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된다.
- ② 본 가이드라인은 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과 방과후 교육 시간 등 학생이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시간동안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용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교직원과 학생은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받는다. 이때, 교직원은 공무원증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교직원증, 학생은 학생증이나 이름표를 출입증으로 갈음하여 사용한다.
- ④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학생에 한하여 제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발급원칙)

- ① 출입증 발급대상 세부기준[별표1]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 ② 출입증은 3년 이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③ 출입증 기재사항의 변동, 유효기간의 경과,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출입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반납과 동시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제2장 출입증의 발급

제5조(출입증의 종류)

- ① 출입증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발급 세부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1. 일반출입증(일반차량출입증 포함)
 2. 일일방문증(일일차량출입증 포함)

제6조(발급권자)

- ① 출입증의 발급권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
- ② 출입증 발급 업무는 학교의 장이 지정한 인력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제7조(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 ① 출입증의 규격 및 제식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르며, 학교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일반출입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전면은 출입증 번호, 사진, 성명,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2. 후면은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발급일,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 ③ 일일방문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전면은 방문증 번호,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2. 후면은 방문객 준수사항,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 ④ 일반차량출입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전면은 차량 출입증 번호, 차량번호, 유효기간,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2. 후면은 성명, 차량번호, 유효기간, 발급일,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 ⑤ 일일차량출입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전면은 차량 방문증 번호,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2. 후면은 방문객 준수사항,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제8조(일반출입증 발급)

- ① 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신청인에 대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심사한 후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일일방문증 발급)

- ① 일일방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일일방문증 관리대장을 작성 후,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절차를 통해 갈음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일일방문증 관리대장의 기재사항과 방문자의 신분증 등을 대조한 후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일방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일일방문증은 학교의 방문객 수를 감안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적정한 수량을 발급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구비서류) 일반출입증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일반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본 1부
3. 사진(3.5cm × 4.5cm) 1매
4.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제11조(발급통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하지 아니한다.

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2. 신분증과 신청서 기재 내용이 상이한 경우
3. 교내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출입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6. 출입증을 분실한 자로서 본 규정에 의한 절차 없이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
7. 타인에게 대여·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8. 기타 학교관리·학생보호에 위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제3장 출입관리

제12조(관리인력·업무) 학교 출입 관리 업무는 학교의 시설·인력 수급 사정에 따라 학교의 장 승인에 의해 지정된 인력이 지정된 장소에서 한다.

제13조(출입문 개폐 등)

- ① 등·하교 시간 외에는 출입문은 전부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인력에 의해 출입증이 확인된 경우에만 교내 출입을 허가한다. 단, 학교의 장 승인에 의하여 출입문 개폐 시간을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기본적인 출입관리를 위해 학교 영역을 표시하는 구조물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출입문의 수는 최소화하되 불가피하게 다수일 경우 학교의 장이 사전에 지정한 장소에서 출입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모든 출입문에 출입증 교부장소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출입증 패용)

- ① 출입증은 교내에서 반드시 패용하여야 한다.
- ② 출입증은 왼쪽 가슴 상단에 패용 또는 목에 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차량출입증은 차량의 전면에서 보아 전면유리 우측하단에 부착한다.

제15조(대여의 금지 등)

- ①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②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조치하며, 향후 출입증 발급을 금지한다.

제16조(분실신고)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분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권자가 일정기간동안 재발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17조(단체방문객의 출입)

- ① 각종 행사 및 기타 사유로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방문목적, 일시, 방문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단체방문객의 경우, 학교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방문증 또는 비표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 ③ 학교 자체 대규모 행사로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학교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시간을 정하여 방문증 발급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출입수칙의 게시 등)

- ① 학교의 장은 방문객 출입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출입수칙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개방시간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 내 보행로
 3. 학교 출입 시 지켜야 할 사항
 4. 학교 출입 및 출입증 발급 장소·절차
 5. 학교의 장이 출입거부·퇴교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등
- ③ 학교의 장은 학교 출입에 관련된 사항을 학생·교직원·지역주민 등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위와 관련하여 민원전용 상담창구를 학교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학교 출입 이외에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제19조(출입거부·퇴교)

-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교를 요청할 수 있다.
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2. 교직원이 출입제한을 요청한 방문객의 경우
 3.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4. 제18조의 출입수칙을 위반한 경우
 5. 출입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기타 학교관리에 위협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② 제1항에 따른 퇴교 요청 불응 시 학교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무단출입자에 대한 조치 등)

- ① 학교의 장은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자를 발견 시 즉시 학교 내 학생보호인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 ② 학생보호인력은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학교 내에 진입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출입증 교부 장소로 인계하여 절차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4장 출입증 취급 시 준수사항

제21조(점검확인) 출입증 발급권자 및 학교 담당자는 연 1회 이상 출입증 발급 및 관리상태를 확인 점검 하여야 한다.

제22조(대장관리)

- ① 출입증 발급권자는 출입증 관리 및 교부사항을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② 출입증 관리대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발급권자 및 발급권자가 지정한 인력 이외의 자가 열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제증명)

- ① 학교의 장이 인정한 제증명에 대하여는 출입 시에 사용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이 발행한 출입증 이외의 신분증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출입증과 같음 사용하려는 자는 출입증 발급권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4조(관리, 회수, 반납, 폐기)

-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기 발급된 제 출입증에 대하여 유효기간 경과 등 출입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이를 즉시 관리인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③ 반납 받은 일반출입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일반출입증 관리대장에 반납 사항을 기재 후 폐기한다.
- ④ 방문객 퇴교 시 반납 받은 일일방문증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일일방문증 관리 대장에 반납 사항을 기재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제5장 부칙

본 가이드라인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출입증 발급대상 세부기준

출입증 구분	유효기간	세 부 기 준
일반 출입증	발급일 ~ 최대 3년	1) 계약직, 방과후 강사 등 정규직 교직원을 제외한 교내 근무자 2) 교내시설(매점, 기숙사 등)에 직원으로 승인받은 자 3) 학교시설(체육관 등)을 장기적·정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4) 교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인 자 5) 학교관리·지원 용역업체의 직원 등으로 해당 업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자 6) 교직원의 편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내에 출입하는 업체의 직원 7) 학교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일용직 근로자 등 한시적 출입자 8) 학생의 보호자 중 수시·정기적으로 학교 출입이 필요한 자 (교내 병설유치원 유아 보호자 포함) 9) 기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일일 방문증	발급 당일	1) 학교시설(체육관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2) 서류발급 등 민원업무를 위해 방문한 자 3) 학생의 보호자 (교내 병설유치원 유아 보호자 포함) 4) 기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일반출입증 및 일반차량출입증



직인

직인

출입증 번호 2026-00

일반 출입증

홍길동
수지초등학교장

앞면(5.35cm × 8.6cm)

소 속 : _____

직위/직급 : _____

성 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유효기간 : _____

2026. 00. 00.

수지초등학교장

직인

뒷면(5.35cm × 8.6cm)

차량 출입증 번호 2026-00

차량 출입증(일반)
00가 0000 / ~ 2026.00.00 까지
수지초등학교장

앞면(15cm × 7cm)

성 명 : _ _ _ _ _
차 량 번 호 : _ _ _ _ _
유 효 기 간 : _ _ _ _ _

2026. 00. 00.
수지초등학교장

뒷면(15cm × 7cm)

일일방문증 및 일일차량출입증

직인

방문증 번호 일일 방문증 귀하의 교내 출입을 허용합니다. 수지초등학교장 직인	방문객 준수사항 1. 교내에서는 항상 출입증을 패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방문객은 교내 출입관련 규정을 준수하에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 방문증은 본인 이외는 양도 또는 대여 할 수 없습니다. 4. 방문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경비실 등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퇴교시에는 본 방문증을 반드시 반납후, 퇴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초등학교장
---	--

차량 방문증 번호 2026-00

차량 출입증(일일)
이 차량의 교내 출입을 허용합니다.
수지초등학교장

앞면(15cm × 5cm)

방문객 준수사항

1. 차량 출입증은 차량의 우측 하단에 부착해주시기 바랍니다.
2. 방문객은 교내 출입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 방문증은 본인 이외는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방문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경비실 등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퇴교시에는 본 방문증을 반드시 반납 후, 퇴교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지초등학교장

뒷면(15cm × 5cm)

[별지 제3호 서식]

일반 출입증(차량 출입증 포함) 발급신청서

신청인 정보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자택:				
	출입목적		출입기간	~		
	발급구분	☐ 신규발급 ☐ 재발급 (사유:)				
차량 정보	차량번호		차 종			

※ 첨부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본 1부
2. 사진(3.5×4.5cm) 1매
3.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위와 같이 일반출입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담당자 확인 (인)

서 약 서

본인은 학교 출입증을 발급 받음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학교 출입증을 학교 출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학교 출입증이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만약 분실 및 타용도 사용으로 인한 제반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3. 본인은 출입증 유효기간 경과 등 출입 사유가 해제되었을 시에는 출입증을 반납조치하고, 분실 시에는 즉시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수 지 초 등 학 교 장 귀 하

분실신고서

성 명		연 락 처	
소속기관		직위 / 직급	
주 소			
출입증 종류		출입증 번호	
분실일시		분실장소	
분실경위			

상기 본인은 기 교부받은 위 출입증을 분실하였기에 상기와 같이 신고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해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분실신고자 : (인)

 년 월 일

수 지 초 등 학 교 장 귀 하

[별지 제6호 서식]

단체방문 신청서

신청기관	명 칭	예) 학부모단체명 등		소재지	
	대표자			전 화	
방문일시	년 월 일 () 시 분 ~ 시 분 까지				
방문목적					
방문인원	총 명		방문 차량	총 대	
방문장소	예) 체육관, 시청각실 등				
대표자	성 명		차량번호 (차 종)		
	생년월일		휴대폰		
단체 방문자	성명		휴대폰		
	성명		휴대폰		
	성명		휴대폰		
	성명		휴대폰		
	성명		휴대폰		
	성명		휴대폰		
	성명		휴대폰		
	성명		휴대폰		
	성명		휴대폰		
	성명		휴대폰		
※ 인원 초과 시 첨부 서류 작성					
위와 같이 수지초등학교의 단체방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의 장(또는 대표자) (인)					
수 지 초 등 학 교 장 귀 하					

3. 물품 수령 방침과 절차

- 가. 식자재를 제외한 모든 물품은 사용목적에 따라 교무실 또는 행정실에서 수령
- 나. 교직원의 개인, 사적인 물품을 학교에서 수령하지 않음
- 다. 식자재의 경우 급식실에서 수령하며, 영양사의 확인을 받음
- 라. 택배기사의 학교출입도 일반인의 출입통제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고, 배움터지킴이는 택배 물품의 크기와 중량 등을 고려하여 택배차량의 교내 진입을 허용
- 마. 학생 등하교 시간대에는 택배 차량의 교내진입을 불허

<2026학년도 수지초등학교 출입문 개방 · 반개방 · 폐쇄 시간 안내>

※ 반개방: 건물 안에서 밖으로 나갈 시 출입 버튼을 누르면 문 개방. (비상 시 탈출 가능) 밖에서 안으로 출입 불가

참고자료

안전사고 조치 및 대응 방법

1. 상황파악·전파

체육관 급식실 입구		후문		
시간	내용	시간	내용	시건담당
~08:00	오전 폐쇄	07:30~09:10	개방	시설당직/학생보호인력
14:00~17:00	오후 개방	⑥ 후관 뒷문		학생보호인력
17:00~18:30	오후 폐쇄	시간	내용	학생보호인력
18:30~22:00	저녁 개방	07:30~09:10	개방	학생보호인력
		09:10~12:30	폐쇄(열쇠잠금)	건담당: 유치원사회복무요원)
		12:30~15:30(자동설정)	반개방 안밖	
		15:30~익일 07:30	폐쇄	

2026.3.6. 기준

정문	학생보호인력		
	(※ 학교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 될수 있음.)		
	팀	월~금	총시간
	1	2시간50분(7:30~10:20)	14시간10분
	2	2시간50(10:20~13:10)	14시간10분
	3	2시간50(13:10~16:00)	14시간10분

환자 상태 파악

피해자의 전반적인 모습·행동과 주변환경, 추가위험(2차 피해) 여부 파악
(필요 시 피해 부위 사진 촬영)

상태 파악 시 교내 응급처치 여부 및 응급환자* 여부 파악 필요

* 응급환자 여부 파악 방법 : 의식소실, 호흡곤란, 과다출혈 등 [붙임 #1]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응급증상 및 응급에 준하는 증상 참조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학생은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면밀히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찰

일반 상해발생 상황

인근 교직원에게 상황전달

최초 발견자는 담당교사* 등 인근에 있는 교직원 등에게 상황전달

* 담당교사 : 담임교사 또는 교과교사를 의미

최초 발견자	세 부 내 용
학 생	인근에 있는 최초 발견 교직원에게 상황전달
교직원	보건교사와 담당교사에게 상황전달 상황 전달 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을 안심시키고, 안전한 곳에 위치시키는 등 질서 및 생활지도 수행

생명 위급상황

최초 발견자가 즉시 119 신고(신고 후 교직원에게 상황전달)

구 분	세 부 내 용
신고상황	의식소실 등 환자 상태가 위급 시 119 즉시 신고 환자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지체 없이 119 신고(문의)
전달내용	사고 장소, 주요 건물, 사건/사고 종류, 환자 상태, 부상자 수, 응급처치 내용, 다른 질문이 없는 지 확인
주의사항	먼저 전화를 종료하지 않음 구조대가 출동 후 관련 정보를 다시 물을 수 있으므로, 신고 후 전화를 사용하지 않음

2. 응급조치

일반 상해발생 상황

상황별 응급처치 시행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 상처, 코피, 탈구, 염좌 등 [붙임 #2] 참조

병원 이동(필요 시)

교내 응급처치 결과 추가 병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 학부모가 피해학생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락

학부모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사전에 파악된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 또는 학교에서 가까운 병원 등으로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지정

병원 이동 시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담당 교직원을 선정하여 병원 동행

병원 이동 시 필요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에게 전화로 간략하고 정확하게 주요 정보 전달

병원 이동 중 2차 사고가 우려될 경우 119 구조대 이송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교직원이 이송할 경우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함

구분	주의사항
1	부상자의 몸을 움직일 때와 옮길 때는 가급적 환자의 움직임이 적게 한다.
2	이송 완료까지 부상자의 상태를 계속 관찰한다.
3	2인 이상이 이송을 할 경우, 반드시 리더를 정하여 이송한다.

생명 위급상황

2차 피해 우려 확인

현장이 위험할 시 피해 학생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척추손상 등 중증 부상자의 경우 무리한 이동 삼가

상황별 응급처치 실시

119 구조대 도착 전 생명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장 먼저 위급상황을 발견한 교직원이 응급처치 실시

응급처치 실시 전 의식, 호흡, 맥박 등 확인

의식이 없을 시 기본소생술 먼저 시행, 의식이 있을 시 상황별 응급처치 실시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 심폐소생술, 호흡기질환, 출혈 등 세부내용은 [붙임 #3]

참조

응급처치가 어려울 경우 피해 부위 촬영 사진을 119 구조대에게 공유하여 지시에 따름

병원 이송

병원 이송 시 교육시설의장, 학부모에게 간략하고 정확하게 주요 정보 전달
학부모에게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학교실정에 따라 병원 이동 시 동행할 담당
교직원 선정

※ 정보 전달방법 : 전화, 문자 등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쳐서, 응급처치 결과 또는 진행 상황 등 전달

3. 상황정리

일반 상해발생 상황

교내 응급처치

구 분	세 부 내 용
주의사항 안내	상황별 응급처치 시행 결과 및 주의사항 안내가 필요할 경우 피해 학생과 해당 담임교사에게 안내
응급처치 및 상황기록	사고 현황 등은 사고 발생 상황을 관찰했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한 교직원이 작성 사고현황 작성방법 : 날짜, 시간, 장소, 사고현황, 피해 학생 상태, 처치내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 보건교사 또는 상황별 응급처치를 실시한 교직원은 필요 시 응급처치 결과 보건일지에 작성

병원 치료

아래 생명 위급상황 조치사항 시행(병원 이송 상황 및 경과 전달, 보호자 부재 시 역할 대행)

학부모 병원 도착 후 치료경과 안내 후 피해 학생 인계

담당 의사가 피해 학생 스스로 귀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피해학생에게 주의사항 안내 후 귀가 조치(학부모 동의 시)

생명 위급상황

병원 이송 및 치료경과 상황전달

병원 이송 상황 및 경과에 대해 교육시설의장 또는 교감, 학부모에게 상황전달

보호자 부재 시 역할 대행

학부모 인계전까지 피해 학생 보호자 역할 대행

(학부모 외 피해 학생 친척 등 역할 대행자가 있을 경우 피해 학생 인계 후 교직원
학교 복귀 가능)

4. 보고조치

일반 상해발생 상황

교내 응급처치 : 보건일지 작성

병원 치료

구 분	세 부 내 용
공제회 신고 및 공제급여 신청여부 판단	병원 치료를 받았을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 항에 따라 해당 시·도공제회 신고 병원 치료결과에 따라 공제급여 신청여부 판단 후 신청

생명 위급상황

보고기준에 따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상황보고

구 분	세 부 내 용
교육청 (교육부)	사망 또는 장애(후유장애)가 예상되는 부상과 3주 이상 입원을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교육청 선 유선보고 후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난집계 시스템으로 사고 통지

붙임 #1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응급증상 및 응급에 준하는 증상

구 분	응급증상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계	급성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두부 손상	의식장애,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심혈관계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호흡곤란, 과호흡
외과계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 광범위한 화상 (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대퇴부 척추의 골절, 혈관손상, 다발성외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화상, 급성복통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 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	
출 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혈관손상 등
안과계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안통, 눈 출혈 등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피부에 나타난 이상반응
정신과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소아과계	소아 경련성 장애	소아경련, 38°C이상의 소아고열
이물질에 의한 응급증상		귀 눈 코 항문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가 필요한 경우

※ 이외의 심한 치통, 치아손상 등 신속을 요하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관련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재구성

붙임 #2 상황별 처치방법

일반생활 응급처치

코의 상처 (코피, 비출혈)

둔탁한 물건 등에 의해 코에 충격을 받거나 고혈압, 고도의 변화 등에 의해서 발생된다.

처치

- 1)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여 혈액을 삼키거나 기도로 흡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 2) 코뼈 바로 아래 부분을 5~10분간 눌러준다.
- 3) 콧등을 얼음주머니 등으로 대어주거나 코 아래 윗입술 바로 위를 압박한다.
- 4) 출혈이 멈추었다더라도 바로 코를 풀지 않도록 한다.

코피 주의사항

피(비출혈)가 20분 이상 지속되거나, 코뼈가 부러진 것이 의심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입의 상처

입의 상처는 피와 흔들리는 치아로 인해 기도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치료할 때는 환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처치

- 1) 머리, 목, 척추 부상이 없으면 머리를 전방으로 숙이고 앉아 있게 한다.
- 2) 머리, 목, 척추 부상이 있으면 회복자세를 취해준다.
- 3) 입술 관통상 일 경우, 입술과 잇몸 사이에 둥근 드레싱을 대어주며, 입술과 혀에 차가운 것을 대어준다.

치아 빠짐 (유실)

치아가 빠졌을 때, 신속한 지혈과 치아를 재이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처치

- 1) 치아의 유실 시간을 파악한다.
- 2) 유실된 치아를 입안에 넣어 병원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어린아이의 경우 삼킬 수 있으므로 자제한다.
- 3) 가장 좋은 방법은 유실된 치아를 우유에 넣어서 보존하는 방법이다. 만약 우유가 없다면 깨끗한 물에 넣어 보존한다.

☑ 유실된 치아를 우유에 보존하는 이유

우유는 구하기 쉽고 멸균이 되어있고 세포가 죽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농도와 영양분을 가지고 있다.

- 4) 가능한 1시간 이내에 치과 병(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 5) 유실된 치아의 뿌리 부분은 절대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치아유실 후 빠른 병원 방문의 중요성

치아가 빠진 후 15분 내에 다시 심었을 때 부작용은 거의 없으며 빠진 치아가 공기 내에서 30분 이상 노출되면 치아를 재이식해도 대부분 뿌리가 흡수되는 부작용이 생긴다. 즉, 치아의 유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느냐에 따라 예후가 달라진다.

긁속의 이물

긁속에 파리 또는 벌레가 들어간 경우 불빛으로 유도해 밖으로 빼낸다. 이물을 바늘이나 철사 같은 것으로 빼낼 경우 귀 손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한다.

[출처: 교육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29~130]

드레싱

드레싱의 용도

감염방지, 출혈방지, 분비물 흡수

드레싱의 종류

- 1) **거즈** - 작은 상처에 사용되며 크기별로 나뉘어서 멸균 포장되어 있다. 일부 거즈는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 상처에 달라붙지 않으므로 특히 화상부위나 분비물이 있는 상처에 유용하다.
- 2) **접착 드레싱** - 혈액이나 액체가 응고 되었을 때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일회용 밴드처럼 생긴 것은 무균 드레싱과 붕대를 혼합한 형태로 작은 베인 상처나, 긁힌 상처에 유용하다.
- 3) **외상용 드레싱** - 크기가 크고 두껍고 흡수성이 있는 소재로 소독이 되어 있으며 주로 출혈이 심한 베인 상처나 벗겨진 상처에 유용하다.

드레싱 할 때 주의할 점

- 1) 솜뭉치나 뭉친 약솜을 드레싱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2) 출혈이 멈출 때까지 젖은 드레싱을 떼지 않는다. 피가 멈추지 않으면 새로운 드레싱을 덧댄다.
- 3) 상처에 달라붙은 드레싱을 억지로 떼어 내지 않는다. 만일 떼어 내야 한다면 따뜻한 물로 적신 후 조심스럽게 떼어 낸다.

붕대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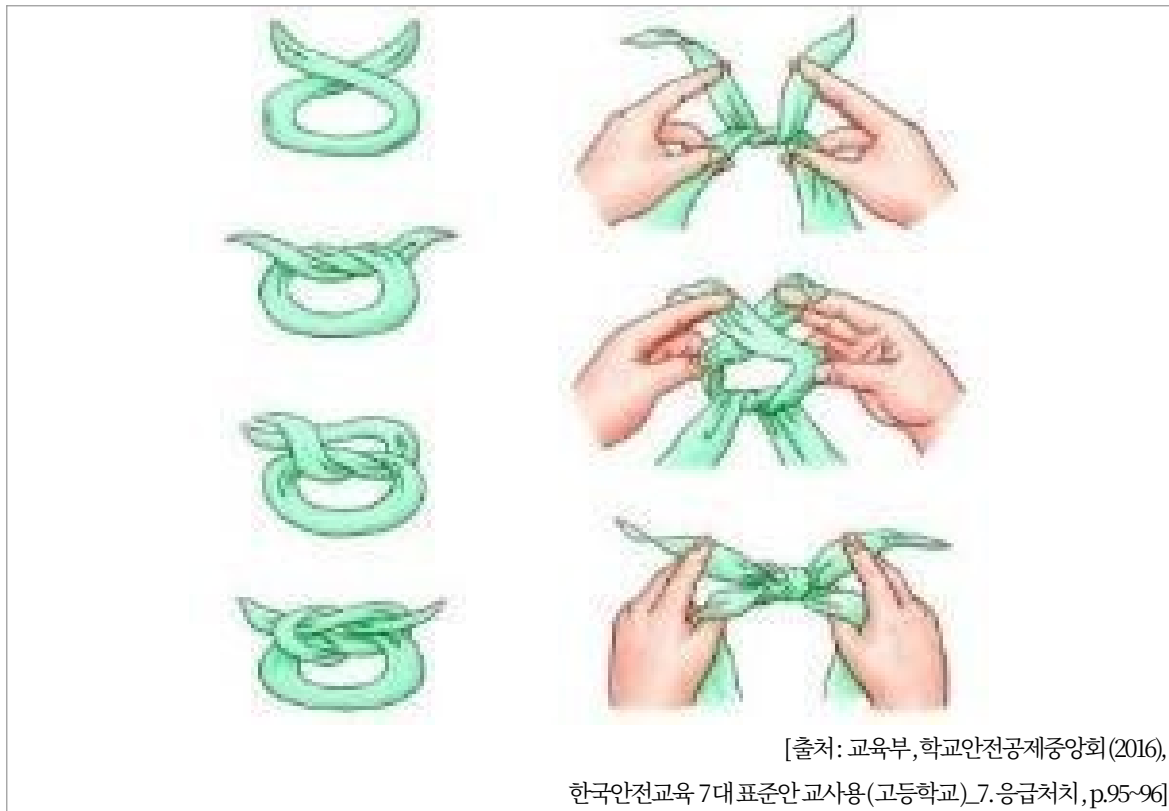
붕대의 용도

- 1) 드레싱이 상처에 붙어 있게 고정
- 2) 부목의 고정
- 3) 압박을 통한 지혈
- 4) 감염 등으로부터 보호
- 5) 부기(浮氣) 예방

붕대의 종류

- 1) 탄력 롤 붕대 : 염좌 등 압박 및 고정용으로 사용한다.
- 2) 사두붕대 : 양 끝을 잘라 귀가 네 개 있는 모양. 돌출된 부위에 유용하다.
- 3) 삼각건 : 반창고가 없어도 드레싱을 고정시킬 수 있으며,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삼각건 매듭법



삼각건을 사용하여 상처 응급처치하기

머리

머리에 댄 드레싱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특히 머리에 넓게 상처를 입었을 때 사용한다.

- 1) 삼각건의 밑변 부위를 폭이 약 5cm 정도 되도록 접는다.
- 2) 접은 부분의 중심이 이마 중앙의 눈썹 위에 오게 한다.
- 3) 삼각건의 양끝을 머리 뒤로 돌려 감고 교차하여 다시 앞으로 오게 하여 이마 중앙에서 묶는다.



어깨

어깨나 상완(위팔)에 댄 넓은 드레싱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두개의 삼각건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중의 한 개는 좁게 접는다.

- 1) 펴 놓은 삼각건 꼭짓점 부근에 세 번 접은 다른 삼각건을 놓고 밑변이 평행하도록 하여 2~3번 접는다.
- 2) 넓은 삼각건으로 상처를 덮고 접은 삼각건의 양 끝을 부상당하지 않은 쪽의 겨드랑이 바로 앞에서 묶는다.
- 3) 부상당한 어깨 쪽 삼각건의 양끝을 겨드랑이 밑으로 돌렸다가 다시 상완부에 돌려서 단단히 묶는다.



팔꿈치

팔꿈치의 상처에 댄 드레싱을 고정시키고 팔꿈치의 운동도 가능케 한다. 팔꿈치를 7자로 구부린 자세로 삼각건을 감는다.

- 1) 삼각건의 넓이를 7~10cm로 만든 후 드레싱 위를 중심으로 놓고 감기 시작한다.
- 2) 한번 돌려 감은 후, 한 쪽은 팔꿈치 위쪽으로 돌려 감아 주고 다른 한 쪽은 아래쪽으로 돌려 감아준다.
- 3) 삼각건의 양 쪽 끝이 팔꿈치 관절의 바깥쪽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나게 한 후 묶어준다.



[출처: 교육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제 20조 제 1항, 2항

탈구

정의

뼈가 정상위치를 이탈했거나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

증상

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관절의 모양이 변하고 붓는다.

응급처치

- 1) 비상사가 아니면 비의료인이 탈구를 바로 잡으려 하면 안 된다.
- 2) 부상부위를 편하게 하고, 냉찜질을 하여 통증과 부기(浮氣)를 가라앉힌다.
- 3) 쇼크에 대한 응급처치를 병행한다.

[출처: 교육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0~102]

염좌

정의

인대 등 관절조직이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파열된 상태를 말한다.

원인

관절을 형성하는 뼈가 정상운동 범위를 심하게 벗어날 경우 주로 발생한다.

증상

- 1) 손상과 동시에 부어오르기 시작하며 통증을 유발한다. 부상부위를 움직일 경우 통증이 심해진다.
- 2) 부상부위의 피부색이 곧바로 변하지는 않지만, 변색될 경우 장기간 지속된다.

응급처치

- 1) 부상부위가 손목일 경우 팔걸이를 하여 고정시키고, 발목일 경우 환자를 눕히고 부목, 삼각건 등을 활용하여 고정시킨 후 부상부위를 높여준다.
- 2) 전문기관의 치료를 받기 전까지 상처 부위를 차갑게 해주는 것이 좋다.
- 3) 염좌가 심하다면 의료인이 도착할 때까지 가급적 움직이지 않는다.
- 4) 발목 염좌가 있는데 혼자 걸어야 한다면, 신발을 신은 채로 신바닥 굽 바로 앞에 접은 붕대의 중간을 대고(신발은 벗은 상태라면 발등위에 접은 붕대의 중간을 대고 발바닥을 한 번 감은 뒤) 양끝을 발뒤꿈치 위(뒤)에서 교차시킨 후 다시 발목 앞으로 돌려 교차시켜 양끝을 발뒤꿈치의 양쪽을 지나간 붕대 밑으로 넣어 걸어서 다시 발등에서 묶는다.
- 5) 발목 염좌는 되도록 걷지 말고 신속하게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출처: 교육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0~102]

근육염좌

정의

근육이나 건 섬유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거나 찢어진 것

원인

근육을 심하게 사용하거나 갑작스런 움직임이 있을 때 발생

증상

관절사이의 통증, 부종, 기형이 발생한다.

응급처치

염좌의 처치내용과 같이 부상부위를 안정시키고, 냉찜질을 한다.

[출처: 교육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0~102]

근골격의 손상 시 일반적인 응급처치

뼈의 골절이 의심되는 때의 응급처치

- 1) 골절이 의심되거나 골절된 환자는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 2) 환자를 함부로 옮기거나, 다친 곳을 건드려 부러진 뼈끝으로 골절을 악화시키게 해서는 안된다.
- 3) 굽은 곳을 바로 펴려고 하지 말고, 밖으로 돌출된 뼈를 안으로 밀어 넣어서는 안된다.
- 4) 골절이나 탈구 가능성이 있거나 의심이 되는 곳은 전부 부목을 댄 후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 5) 출혈이 심하면 지혈을 한 후 부목으로 고정하여 병원으로 후송한다.

탈구(관절이 빠졌을 때) 시 응급처치

베게나 쿠션을 사용 부상자를 가장 편한 자세로 유지해 주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염좌(근막 또는 인대 손상 등) 시 응급처치

- 1) 관절 주위의 인대나 조직의 손상으로 흔히 ‘삔었다’ 고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 2) 부상자가 가장 편한 자세로 관절을 지탱해 주고 손상된 부분을 높게 해준다.
- 3) 찬 얼음으로 부은 것과 통증을 감소시켜 주면 효과적이다.
- 4) 골절과 같은 처치로 부목을 대준다.

부목사용의 목적

RICE(Rest-Icing-Compression-Elevation)

[출처: 교육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0~102]

손상부위에 부목을 사용 시 고려할 점

- 1) 가능한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손상부위를 지지하면서 부착한다.
- 2) 개방골절은 출혈, 감염방지를 위해 골절부위를 지지하고 붕대를 감아준다.
- 3) 단단한 부목사용 시 부드러운 천 등을 감싸주면 좋다.
- 4) 부목사용 시 부목과 신체 사이의 빈 공간에 고임(삼각건, 천 등을 활용)을 넣어 주는 것이 좋다.
- 5) 부목은 삼각건, 붕대, 옷 등을 이용해 잘 고정한다.
- 6) 손가락, 발가락 끝을 자주 확인하여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확인하며, 부목을 댄 아래쪽이 저린다거나, 손·발가락의 피부색이 변할 경우 부목을 잠시 풀어준다. (30분마다 한 번씩 혈액순환 확인)
- 7) 가능하면 부목을 댄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고 충격처치를 병행한다.

휴식(Rest)

- 1) 통증이 유발되는 움직임과 운동은 피하게 하고, 환자가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해준다.
- 2) 머리, 목 손상 의심 시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힌다.

얼음찜질(Icing)

- 1) 손상부위에 거즈나 의복을 대어 피부손상을 예방한 후 얼음 등을 이용해 차갑게 해준다. 얼음찜질은 부기(浮氣)와 통증, 불편함을 감소시킨다.
- 2) 얼음은 별도의 얼음주머니를 활용하거나 없을 경우 수건이나 옷에 싼 후 이용한다. 단, 개방성 골절에는 얼음찜질을 하지 않는다.
- 3) 손상부위에 10분간 냉찜질을 한 후 손상부위를 확인했을 때 심하게 차갑다고 느낀다거나 빨갛게 된다면 냉찜질을 중단한다.

압박(고정)(Compression)

- 1) 근골격계 손상이 의심되면 얼음찜질을 하거나 높여 주기 전에 부목 등으로 손상부위를 고정한다.

2) 압박(고정)의 목적

- 통증 감소
- 주변의 연한 신체조직 손상방지
- 심각한 출혈의 위험성 감소
- 손상 부위의 혈액순환 개선
- 폐쇄성 골절이 개방성 골절로 악화될 가능성 예방

올리기(손상 부위 높임)(Elevation)

- 1) 손상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 혈류량을 감소시켜 부기(浮氣)를 줄여준다.
- 2)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는 부목을 대고 높여 준다.

화상

화상의 정의

과도한 열, 화학물질, 전기, 태양열, 방사능 등에 의해 피부조직에 손상이 유발되는 것→ 화상으로 피부가 벗겨지게 되면 감염이 유발될 수도 있고, 신체로부터 나오는 체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체의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손상될 수도 있다.

화상의 원인(연령별)

- 1) 3세 이하의 소아 - 가정에서 끓는 물
- 2) 3~14세 - 불장난 등으로 인한 화염 또는 그을림
- 3) 15세 이상 - 작업상의 사고

화상 응급처치

화상처치의 4가지 기본단계

- 1) 화상부위를 냉각시킨다.
- 2) 감염예방을 위해 화상부위에 드레싱을 해준다.
- 3) 쇼크 응급처치를 병행해 준다.
- 4) 의료적 도움의 필요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화상 상황

- 1) 핫팩 : 저온 화상
- 2) 주전자(포트) : 컵이나 종이컵에 물을 붓다가 화상
- 3) 컵라면 : 컵라면에 물을 붓다가 화상을 입거나 컵라면 용기를 들고 이동 중 물을 쏟아 화상을 입음

화상의 종류와 증상

1도 화상 (표재성/홍반성 화상, Superficial Burns)	피부의 외피층만 손상된 것으로 대부분 일광에 의해 발생한다 증상 : 피부가 빨갛게 되고, 따끔거리는 통증이 있다 치료하면 대부분 특별한 흉터 없이 5~6일 안에 완치된다
2도 화상 (부분층/수포성 화상, Partial-Thickness Burns)	피부의 외피와 표피, 진피까지 손상된 화상이다 증상 : 물집, 심한 통증, 흉터나 피부변색(붉어짐), 탈모 등이 생긴다 치료해도 흉터가 생길 수 있으며, 보통 3~4주 안에 완치된다
3도 화상 (전층/괴사성 화상, Full-Thickness Burns)	피부의전층, 피하지방, 근육, 뼈, 혈관, 신경등하층구조까지손상된화상 증상 : 상처부위가 갈색 또는 거무스름하고, 아래에 있는 조직은 새하얗게 되고, 통증이 심하거나 신경의 끝부분이 파괴되어 통증이 없을 수 있다 치료해도대부분 흉터가남으며, 광범위한 3도 화상은 사망할수도 있다

화상 발생 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 1) 된장, 간장, 기름, 약 등을 바르지 말 것(세균 감염 우려)
- 2) 물집을 터트리지 말 것(세균 감염 우려)
- 3) 눈 화상 경우 문지르지 말 것(각막 손상으로 실명 우려)
- 4) 떨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떼어내지 말 것(피부손상, 세균 감염)
- 5) 피부가 부어오르기 전 시계, 반지 등 귀금속 제거할 것

출처: 응급처치법(대한적십자사)

[출처: 교육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11~112]

열성질환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일사병)
정의	고온에서 과도한 활동 후 체내 수분과 염분 소실로 일어나는 질환	땀을 과다하게 흘려 체내 수분이 떨어짐과 동시에 피부로 가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질환	고온의 태양열 등에 의해 뇌의 체온중추기능이 마비되어 일어나는 질환
원인	고온의 환경에서 강도 높은 운동과 노동을 할 때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는 경우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는 경우
증상	근육 경련 (다리와 복부에 많음) 따뜻하고 습한 피부 체온은 정상이거나 약간 높음 많은 양의 땀 분비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차갑고 축축하며 창백한 피부 체온은 정상 빠르고 약한 맥박 심한 발한	체온상승 건조하고 따뜻한 피부 의식을 점차 잃음 초기에는 강하고 빠른 맥박, 점차 느리고 약해짐 초기의 깊은 호흡에서 점차 얇은 호흡
응급 처치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함 진하지 않은 소금물, 스포츠 음료를 줌 경련이 일어난 부위를 마사지 함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함 옷을 느슨히 함 젖은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냄 의식이 있으면 시원한 물을 섭취 눅힌 상태에서 다리를 높여줌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함 옷을 느슨히 함 젖은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냄 가능한 빨리 의사의 치료를 받음 환자의 머리, 어깨를 약간 높임

열경련(Heat Cramps)

정의

고온상태에서 과도한 신체활동 후 체내 수분, 염분의 손실에 의해 근육경련이 유발되는 상태

원인

심한 발한으로 인해 급격하게 신체 내 수분과 염분을 잃을 경우 발생된다.

증상

다리와 복부에 통증을 동반한 근육수축, 체온은 정상, 축축한 피부

응급처치

시원한 장소에서 시원한 물 또는 스포츠 음료를 주면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수축된 근육을 마사지한다.

열탈진(Heat Exhaustion), 열성피로(Heat Fatigue)

정의

고온상태에서 체내 수분과 염분의 과도한 손실로 혈류량이 감소되고, 이로 인한 임상증상이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

원인 및 특징

극심한 고온에서 장시간 운동을 하거나 심한 노동으로 수분 손실이 진행되어 혈류량이 감소하지만 피부나 말초로 가는 혈류는 증가하며 생존에 필요한 장기로 가는 혈류는 감소한다.

증상

낮거나 정상적인 체온, 차고 축축하며 창백한 피부, 두통, 탈진, 메스꺼움, 현기증과 허약 /무력감, 빠르고 약한 맥박 등

응급처치

- 1) 시원한 장소로 환자를 옮긴다
- 2) 옷을 느슨하게 해준다
- 3) 젖은 수건으로 열을 증발시킨다
- 4) 의식이 있으면 적은 양의 시원한 음료를 준다

열사병(Heat Stroke)

정의

고온에 의해 체온조절 중추의 기능이 마비되어 주요장기 손상이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

원인 및 특징

고온에 의한 체온조절 중추기능의 마비

증상

높은 체온, 붉고 건조한 피부, 의식 소실, 약하고 빠른 맥박, 얇고 빠른 호흡 등

응급처치

119에 도움을 요청하며, 그 외의 처치법은 열탈진의 처치와 동일하다.

동상 및 저체온증

동상의 정의

신체의 일부가 언 상태를 말한다.

동상의 원인

추위에 신체부위가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며 기온, 노출시간, 바람 등이 주요 유발 요인이다.

동상의 종류

- 1) 표재성 동상 : 피부는 손상 되었으나 피부 아래 깊은 조직에는 영향이 없는 상태다.
- 2) 심부 동상 : 피부와 피부 아래 깊은 조직까지 침범한 동상이며 심하면 신체부위를 잃을 수 있다.

동상의 증상

동상 부위의 감각 소실, 끈적끈적하고 차가운 피부, 변색된 피부색

동상 응급처치법

- 1) 동상 부위를 따뜻하게 한다는 이유로 문지르지 않는다.
- 2) 동상 부위를 37~40도 정도의 물에 피부색이 정상이 될 때까지 담근다. 온도계가 없는 경우 손을 넣어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의 물이면 된다.
- 3) 동상 부위는 건조한 무균 붕대로 감고, 손·발가락 사이사이에 는 멸균된 솜이나 거즈를 넣고 감는다.
- 4) 물집은 터뜨리지 않고, 신속하게 전문의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

벌에 쏘였을 때

정의

벌의 몸통 부분에 있는 침에 의해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에 보고되는 중독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원인

벌통을 건드린 경우, 요란한 색의 옷을 착용한 경우 등이 있다.

증상

보통은 쏘인 자리가 아프고 붓는 정도지만 벌독에 의한 알레르기가 있으면 피부 두드러기, 저혈압, 의식불명, 천식발작, 호흡곤란, 복통 등이 나타나며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벌독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벌

꿀벌, 말벌, 땅벌 등

벌에 쏘인 경우 응급처치

핀셋을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밀어서 제거하며, 벌침 제거 후 냉찜질을 한다.
(벌침을 제거할 때에는 독낭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벌독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

호흡곤란과 의식장애 발생 시 누운 자세를 유지하면서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충분히 확보한 자세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 1) 벌을 유인할 만한 향수, 화장품, 요란한 색의 옷을 피한다.
- 2) 벌이 가까이 접근하면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낮은 자세를 취한다.
- 3) 옥외에선 언제나 양말, 운동화를 착용하고, 몸에 맞는 옷을 입지만 원색의 옷은 피한다.

독충에 물렸을 때 가장 위험한 경우를 말하며 독충에 의한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신적인 과민반응 - 두통, 어지럼증, 구토, 복통, 호흡곤란, 경련, 의식저하 등의 쇼크증상이 나타나면 매우 위험하다.

과민성 쇼크의 경우 - 급속히 진행되며 1~2시간 이내에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자의 60~80%는 기도가 부어 질식하는 것으로 보고됨.

응급처치 - 쇼크 응급처치를 실시하되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예방 - 평소에 알레르기나 특정물질에 과민반응이 있으면 주변에 알린다.

[출처: 교육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27~128]

붙임 #3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심폐소생술

1. 현장 안전과 반응 확인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구조자는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 감염의 가능성은 없는지를 우선 확인한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본다. 의식이 있다면 환자는 대답하거나 움직이거나 신음을 내는 것과 같은 반응을 나타낸다. 확인하는 동안에 쓰러져 있는 환자의 머리나 목의 외상이 의심되면 손상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한다. 이때 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한다. 반응이 있고 진료가 필요한 상태이면 119에 연락을 한 다음 환자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면서 구급상황(상담)요원의 지시를 따른다.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2. 응급의료체계 신고

반응이 없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쓰러진 사람이 심장정지 상태라고 판단하고 즉시 119에 신고(혹은 원내 심장정지 코드 방송)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요청한다. 심장정지 환자를 목격한 경우에는 주변에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고 다른 사람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도움을 요청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119에 신고한다.



3. 호흡 확인

호흡은 119 신고를 먼저 한 이후에 환자의 호흡을 확인해야 한다. 호흡 확인 과정은 매우 어려우며, 특히 심장정지 호흡이 있는 경우 심장정지 상황에 대한 인지가 늦어져 가슴압박의 시작이 지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반인은 반응을 확인한 후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요청한 후 구급상황(상담)요원의 안내에 따라 호흡의 여부 및 비정상 여부를 판별해야 하며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가슴압박을 시작한다.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4. 가슴압박

가슴압박은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 정중앙(복장뼈의 아래쪽 1/2)에 한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올려서 겹친 뒤 깍지를 낀 자세로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성인 심장정지의 경우 압박 깊이는 약 5cm, 가슴압박의 속도는 분당 100회~120회를 유지한다.

또한, 가슴압박 이후 다음 가슴압박을 위한 혈류가 심장으로 충분히 채워지도록 각각의 가슴압박 이후 가슴의 이완을 최대한 할 것을 제안한다. 가슴압박이 최대한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가슴압박이 중단되는 기간과 빈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성인 심장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2로 시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심폐소생술 시작 1.5~3분 사이부터 가슴압박의 깊이가 알아지므로 2분마다 가슴압박을 교대해 주는 것이 구조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성인 가슴 압박법]



[소아 가슴 압박법]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5. 기도유지 및 인공호흡

1) 기도유지 방법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구조자는 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head tilt-chin lift) 방법을 사용하여 기도를 개방한다. 이 방법은 한 손을 심장정지 환자의 이마에 대고 손바닥으로 압력을 가하여 환자의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게 하면서, 다른 손의 손가락으로 아래턱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받쳐주어 머리를 뒤로 기울이는 것이다. 이때 턱 아래 부위의 연부조직을 깊게 누르면 오히려 기도를 막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기도가 열리면 환자의 입을 열어 입-입 호흡을 준비한다.

2) 인공호흡 방법

인공호흡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1초에 걸쳐 인공호흡을 한다.
- ② 가슴 상승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의 일회 호흡량으로 호흡한다.
- ③ 가슴압박 동안에 인공호흡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④ 인공호흡을 과도하게 하여 과환기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자동제세동기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기도폐쇄(하임리히법)

순서	처치 방법
1	환자에게 “목에 뭐가 걸렸나요?”라고 묻고, 말을 하지 못한다면 기도 폐쇄이므로 즉각 처치 시행
2	환자가 기침을 크게 한다면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스스로 기침을 못하는 성인이나 1세 이상의 소아 환자라면 즉시 등 두드리기 시행
3	등 두드리기 5회 연속 시행 후 효과가 없다면 5회의 복부 밀어내기(하임리히 법) 시행
4	기도폐쇄 징후가 해소되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기 전까지 계속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 5회씩 반복



등 두드리기



복부 밀어내기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골절

골절의 형태별 분류

- 1) 분쇄골절 - 골격이 손상되어 두 개 이상의 골절 파편으로 나뉘어진 경우
(자동차 사고 등에 많음)
- 2) 나선골절 - 골절이 뼈 둘레를 돌면서 골절된 형태(스키사고 등에 많음)
- 3) 사선골절 - 뼈의 축에서 사선으로 골절된 형태
(뼈에 약간 또는 중간 정도의 압력이 가해진 경우)

골절의 원인별 분류

- 1) 외상성 골절 - 일반적인 골절, 정상적인 뼈가 외력으로 인해 발생
- 2) 특발성 골절 - 질병으로 인해 변화된 특정부위의 뼈가 약해져 외력 없이도
근수축에 의해 이상골절이 발생한 상태. 병적 골절이라고도 함
- 3) 피로성 골절 - 일정 외력이 장기간 반복되어 뼈에 누적되면 피로현상으로
변질되는 현상

신체 부위별 골절처치

1) 빗장뼈(쇄골) 골절

증상

- 일반적인 골절 증상이 나타난다.
- 대부분 부러진 부분이 만져진다.
- 팔을 어깨위로 들지 못한다.
- 부상당한 어깨가 반대편보다 처진다.

응급처치

- 부상당한 쪽의 손을 팔꿈치 보다 높게 하여 반대쪽 어깨에 되고 삼각건을 댄다.

2) 위팔뼈(상완골) 골절

증상

- 골절의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 어깨관절의 운동을 할 수 없다.

응급처치

- 팔꿈치를 ‘ㄴ자’ 로 구부린 후 어깨부터 팔꿈치 길이의 부목을 댄다.
- 삼각건을 부러진 뼈 위쪽과 아래쪽에 하나씩 묶는다.
- 삼각건으로 팔걸이를 만든다.
- 삼각건으로 팔 전체를 고정한다.
- 부목이 없을 시 붕대로 팔 전체를 가슴에 대고 감는다.

3) 팔꿈치뼈(주관절) 골절

증상

- 관절부위가 붓고 팔을 구부릴 수 없다.

응급처치

- 겨드랑이부터 손가락까지 부목을 댄다.
- 팔꿈치가 구부러져 있으면 팔을無理하지 않게 끌어올리고 팔을 몸체에 대고 삼각건을 고정시킨다. 팔과 몸을 고정할 때는 골절부위를 건드리거나 힘이 가해 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 구부러진 팔을無理하게 펴지 않는다.
- 이송 시 삼각건으로 허리를 묶어 고정한다.

4) 아래팔뼈(전완골) 골절

증상

아래팔 뼈 두 개가 모두 부러질 경우 골절의 일반적 증상이 나타난다.
(아래팔 뼈 전완의 뼈 한 개 또는 두 개가 부러질 수 있다)
한 개만 부러졌거나 손목 뼈마디가 부러졌을 때는 부상 부위를 움직이기 어렵다.

응급처치

편안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게 한다.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 길이의 부목을 손바닥 쪽에 댄다.
두 개의 삼각건을 골절부위 위쪽부터 맨다.
손바닥이 가슴 쪽을 향하도록 하고, 팔꿈치 보다 약 10cm정도 높게 한 후 삼각건으로 고정시킨다.

쇄골(빗장뼈) 골절	주관절(팔꿈치골절)	전박골(아래팔뼈골절)
		

출처: 응급처치법(대한적십자사)
[출처: 교육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6~108]

전기화상

특징

- 1) 화상의 크기가 작아도 신체 내부의 심한 손상이 동반되며, 특히 심장은 전기에너지에 의해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
- 2) 전기가 신체에 접촉하면 전기가 신체내부로 유입되고 다른 부위로 나오게 되는데 전기가 들어가고 나온 곳에 화상을 입고 전기가 나오는 곳의 상처가 깊고 크다.

전기에 의한 화상 응급처치 방법

- 1) 구조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현장의 모든 전원을 차단 후, 접근해야 한다.
- 2) 필요시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 쇼크, 화상, 골절 처치 등을 실시한다.
- 3) 처치 - 119를 통해 화상전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전문치료를 받도록 한다.

저체온증

저체온증의 정의

내·외부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저체온증의 원인

찬물 속에 오래 있거나 젖은 의복을 장시간 입고 있을 때, 난방시설이 없는 곳에 장시간 체류 등 장시간 낮은 온도에 노출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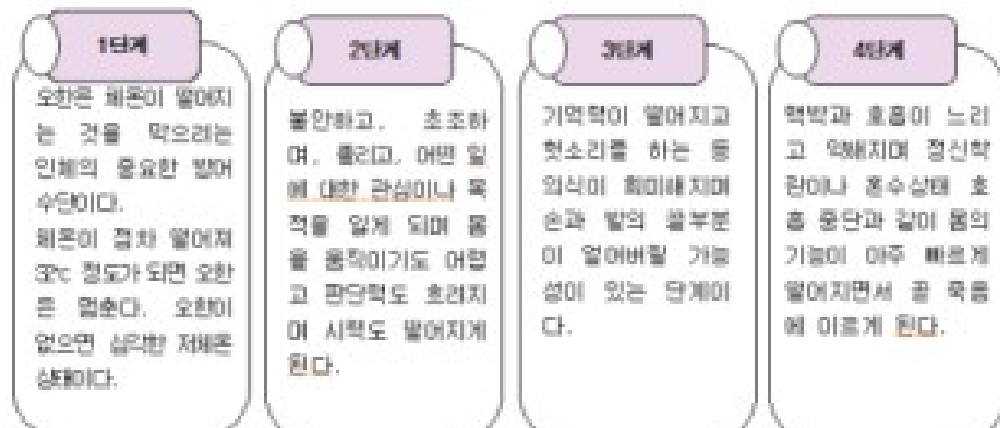
저체온증의 증상

- 1)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다.
- 2) 체온이 떨어지면서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박동하며 심하면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 3) 온몸을 떠다.(증상이 진행됨에 따라 떨림은 없어진다.)
- 4) 몸이 저리다.
- 5)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한다.
- 6) 무감각해지고 의식상태가 희미해진다.

저체온증의 응급처치법

- 1) 신속히 환자상태를 파악하여 치명적인 상태(호흡정지, 심장마비) 유무를 확인한다.
- 2) 필요 시 119에 도움을 요청한다.
- 3) 젖은 의복은 벗기고 환자의 몸을 건조하게 유지한다.
- 4) 따뜻한 장소로 옮겨 몸을 따뜻하게 한다. 단, 갑자기 체온을 높이지 않는다.
- 5) 저체온증 환자가 의식이 잃을 경우 필요 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구조대원을 기다린다.

저체온증의 단계



저체온증의 온도별 변화



저체온증 환자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갑작스럽게 체온을 변화시켜 환자의 떨림 증상을 억지로 중지시키려 하지 않는다

32℃ 이하의 저체온 환자에게 뜨거운 물병이나 핫팩 등으로 급속 가온치료를 하지 않는다. 급속가온은 말초의 차가운 혈액을 순환시켜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다.

[출처: 교육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20~122]

점심시간 학생 안전 지도 계획

1. 목 적

점심시간 학생들 간의 접촉이 잦아지고 교내 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발생하여 점심시간 실내·외 안전 지도를 통해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자 함.

2. 운영방침

- 가. 각 학급에서는 점심시간 실내·외 생활지도 및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
- 나. 점심시간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실내(교실, 복도, 계단 등)는 각 학급에서 담임교사가 임장 지도를 하며, 실외(운동장, 잔디마당, 놀이터 등)는 각 학년에서 반별로 요일을 정해 순회지도 한다.
- 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특이사항 발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후속 조치를 취하여 학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3. 세부계획

- 가. 점심시간 안전 지도 내용
 - (1) 실내 생활 안전 지도
 - 복도에서 우측 보행하며 뛰지 않기
 - 실내에서 잡기 놀이, 공놀이 등 위험한 행동하지 않기 등
 - (2) 실외활동 안전 지도
 - 운동장, 놀이터 등 교내 시설 이용 안전교육 실시
 - 텃밭, 화단 등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기
 - 주차장 쪽 출입문으로 다니지 않기 등
- 나. 실내 생활 지도
 - (1) 장소: 각 학급 교실 및 복도, 계단 등 학급 주변 장소
 - (2) 방법: 학급 담임 교사가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임장 지도를 한다.
- 다. 실외 생활 지도
 - (1) 장소: 운동장, 잔디마당, 놀이터 등 학생 사용 장소

4. 기대효과

점심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학생 소재 불분명 시 대응 매뉴얼

구분	정규 교육과정운영중 학생소재확인	방과후 및 늘봄 학교활동 학생소재확인
상황	· 9시가 지나도 등교를 하지 않았을 때 · 수업 중 갑자기 사라졌을 때 ·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이 끝나고도 수업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 정규교과수업이 끝나고 늘봄방과후 교육활동 중 학생 소재 불분명이라고 연락을 받았을 때 · 학부모로부터 학생 소재 불분명으로 전화를 받았을 때
전담팀 구성	· 교장, 교감, 수업 없는 모든 교사 · 학적담당, 학교안전지킴이	· 교장, 교감, 학생안전복지부장, 담임교사, 늘봄담당, 학교안전지킴이
절차 및 활동방법	① (담임) 1학생 소재 확인 (1차 학부모 연락) ② (담임) 보고 : 담임 → 교감 → 교장 ③ (교내안내전담) · 학생 소재 (미)확인 알림 · 해당 학생 당해년도 사진 전송, · 학년 반 성명, 일시 등 내용/ 필요시 교내 방송 ④ (순찰전담) -수업 없는 교사 교무실로 모이기 · 학생 사진 확인 · 층별 담당자 지정 후 교내(외) 순찰 · 학생 소재 파악 시: 교무실에 연락 ⑤ (학적 담당) 2차 학부모 연락 ⑥ (교감) 학생소재 미확인시 경찰서 신고 ⑦ (교감) 학생소재 미확인시 교육지원청 통보	① (늘봄강사, 전담사) 학생 소재 확인 (1차 학부모 연락) ② (늘봄 강사, 전담사) 보고 → 늘봄담당 (실장, 실무사, 보육전담사) → 교감 → 교장 ③ (교내안내전담) · 학생 소재 (미)확인 알림 · 해당 학생 당해년도 사진 전송, · 학년 반 성명, 일시 등 내용/ 필요시 교내 방송 ④ (순찰전담) -수업 없는 교사 교무실로 모이기 · 학생 사진 확인 · 층별 담당자 지정 후 교내(외) 순찰 · 학생 소재 파악 시: 교무실에 연락 ⑤ (담임, 보육전담사, 늘봄 담당) 2차 학부모 연락 ⑥ (교감) 학생소재 미확인시 경찰서 신고
대응 본부	총괄-소속 학년 교감 업무 담당-학생안전복지부장 해당 학생 담임, 강사 · 상황 교무실 연락, · 학생 정보 전송 · 사고 일지 작성 학적실무 / 늘봄실무 · 상황 교내 안내 · 교무실 상시 대기 · 민원 응대 교직원, 학생안전인력 · 교내외 순찰 행정실 (CCTV 담당) · CCTV열람	
예방 교육	· 학부모 연락 후 학교 밖에서 발견 시 담임교사 허가 받기 ▶ 교실 ② 보건실에 갈 경우 꼭 허락받고 가기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기 ▶ 보건실 ① 치료나 안정을 위해 수업시간 보건실 있어야 하는 경우 담임에게 연락 ② 쉬는 시간, 점심시간 보건실에 갈 경우 선생님께 말씀 드리기 ③ 보거식로는 학생 2명이 함께 이동하기	
기타	· 학생의 수업 참여 및 교실 입실 거부 시 학부모에게 즉시 연락하여 해당 학생 학부모 인계 여부 확인 · 1일 2회 이상의 수업 참여 및 교실 입실 거부 발생 시 해당 학생 학부모에게 인계하며 학부모에게 학생 인계 전까지 보류된다는 사실 알리기	
보건교사 수업 중 보건실 응급상황 발생시	■ 비상연락망을 확인하여 5학년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의 전화번호, 인터폰 번호를 보건실과 5학년 연구실에 비치하여 응급상황시 활용. *135보건실: 031 262 0911 *246보건실: 031 262 0913 1. 응급 후송시에는 보건수업 중인 교사가 보건실로 복귀하고, 담임교사는 자신의 반으로 복귀한다. 2. 보건교사 1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대기시간 지연, 응급상황 발생 등)이라고 판단될 시에는, 보건교사는 5학년 보건수업 반 담임교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학년 담임교사는 학생 관리0, 처치 X)	

[붙임 1]

사고기록지 (예시안)

대상학생	O학년 O반 O번 000 (성별)
특이사항	흰색 안경 착용, 청바지, 노란색 상의
발생일시	2020. O. O.(O) O시경(O교시 중)
발생장소	O학년 O반
발생경위	위 학생이 수업 중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한 후 5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담임교사가 화장실을 확인하였으나 학생이 없었음
조치사항	학생 사진 확인 및 CCTV 열람: 학교 밖으로 나가는 모습은 찍히지 않음. 전담팀 소집 및 교직원 전체 메시지 전송: O학년 O반 앞 화장실 복도에서 해당 학생 발견 해당 학생 즉시 귀환
처리결과	학생 소재 및 안전 확인: 화장실에 불이 꺼져있어 아래층 화장실을 이용하였다고 함. 이런 경우 반드시 담임 선생님께 상황 설명 후 다른 화장실 이용하도록 지도.